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박사학위논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안정적 제도화 방안 연구

2026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김 민 재

HANSUNG
UNIVERSITY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전주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안정적 제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abl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HANSUNG UNIVERSITY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김 민 재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전주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안정적 제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abl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위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김 민 재

김민재의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김 지 성 (인)

심 사 위 원 고 대 유 (인)

심 사 위 원 조 용 민 (인)

심 사 위 원 이 정 희 (인)

심 사 위 원 전 주 상 (인)

HANSU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안정적 제도화 방안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김 민 재

본 연구는 2024년 3월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사안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와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충분한 시범운영과 현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된 결과,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조사 권한 범위, 업무 경계 등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도출된 요인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셋째,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 집단 간 요인의 중요도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를 위해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 각 10명씩 총 30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수정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의 4개 항목 32개 요인을 초기 측정도구로 구성하였으며, 각 차수별로 내용타당도 비율(CVR)·합의도·수렴도·기술통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개 항목 26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항목별 중요도 순위는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직무역량 및 전문성, 업무부담 및 범위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가 최우선 항목으로 도출된 것은 기존 교사 주도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구조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해관계자 전체에 공유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체 요인 중 전문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으며, 법적 분쟁 보호, 제도의 유지 및 확대, 공정성 확보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행정업무 이관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은 3차 조사까지 전문가 패널 간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집단 간 이견이 지속된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집단별 분석 결과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를, 교육청 집단은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을, 책임교사 집단은 업무부담 및 범위를 각각 최우선 항목으로 평가하여, 각 집단의 역할과 현장 경험에 따른 인식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에서 전담조사관 집단이 법적 신분 보장과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최상위로 평가한 것과 달리, 교육청, 책임교사 집단은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최하위로 평가하여 집단 간 인식 경향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체계적인 교육 연수 체계 구축, 전담조사관, 교육청, 학교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제도화, 표준 운영 지침 정비를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요인을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탐색한 초기 연구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델파이 기법, 내용타당도, 중요도 분석**

목 차

I.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1.1 연구의 배경 ····· 1
1.1.2 연구의 목적 ····· 2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6

2.1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전담조사관 제도 현황 ····· 6
2.1.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 6
2.1.2 학교폭력 현황 ····· 7
2.1.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개념 ····· 10
2.1.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현황 ····· 12
2.1.5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 13
2.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전후 사안 처리 절차 비교 ····· 16
2.1.7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이후의 반응 및 효과 ····· 19
2.1.8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조사·처리 제도 분석 ····· 23
2.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 27
2.2.1 선행연구 별 주요 요인 고찰 ····· 28
2.2.2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방향 ····· 37
2.2.3 발전 방안 도출의 이론적 근거 ····· 38
2.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주요 영향요인 ····· 42

III. 연구설계 ····· 46

3.1 연구 절차 개요 ····· 46
3.1.1 측정도구 초안 개발 단계 ····· 47

3.1.2 측정도구 타당화 단계 ····· 48
3.2 조사 방법 ····· 49
3.2.1 전문가 집단 구성 ····· 49
3.2.2 전문가 분석 및 측정 문항 선정 ····· 51
3.2.3 델파이 기법 ····· 55

IV. 분석 결과 ····· 61

4.1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 61
4.2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 70
4.3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 80
4.4 델파이 최종 분석 결과 ····· 91

V. 결 론 ····· 102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02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 108

참 고 문 헌 ····· 110
부 록 ····· 124
ABSTRACT ····· 150

HANSUNG UNIVERSITY

표 목 차

[표 2-1]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률 ····· 8
[표 2-2] 연도별 피해유형별 비중 ····· 8
[표 2-3] 학교급별 피해유형별 비율 ····· 9
[표 2-4] 학교급별 목격 응답률 및 목격 후 행동 ····· 10
[표 2-5] 시도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상황 ····· 12
[표 2-6]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 및 전담조사관 배정&조사 절차 ····· 15
[표 2-7]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 비교 ····· 17
[표 2-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후 학교폭력 사안 처리 ····· 18
[표 2-9]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전후 사안 처리 절차 비교 ····· 19
[표 2-10] 현장 교사가 제안하는 전담조사관 개선방안 ····· 20
[표 2-1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의 효과 ····· 22
[표 2-12]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제도 ····· 23
[표 2-13]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조사 제도 비교 ····· 27
[표 2-14] 선행연구 별 주요 요인 및 항목 분류 현황 ····· 35
[표 2-15] 4개 항목별 이론적 근거 ····· 42
[표 2-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발전 방향을 위한 요인 종합 ····· 42
[표 3-1] 초기 요인 검토 및 델파이 조사 문항 확정 현황 ····· 47
[표 3-2] 각 전문가 집단 구성 현황 ····· 50
[표 3-3] 측정도구 안 ····· 52
[표 3-4] 델파이 조사 실시 일정 ····· 55
[표 3-5] 조사 항목별 문항수 및 신뢰도 ····· 57
[표 4-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 61
[표 4-2]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 64
[표 4-3]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 66
[표 4-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 68
[표 4-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2차 조사지 반영 현황 ····· 71
[표 4-6]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 72
[표 4-7]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 74

[표 4-8]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 76
[표 4-9]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 78
[표 4-10]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3차 조사지 반영 현황 ····· 81
[표 4-1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 82
[표 4-12]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 84
[표 4-13]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 86
[표 4-1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 88
[표 4-15]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최종 요인 확정 현황 ····· 90
[표 4-16] 제도 발전을 위한 요인 ····· 91
[표 4-17]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전체) ····· 94
[표 4-18]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95
[표 4-19]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교육청 담당자) ····· 95
[표 4-20]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학교 책임교사) ····· 96
[표 4-21] 전반적인 항목의 중요도 ····· 97
[표 4-22]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의 중요도 ····· 98
[표 4-23]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의 중요도 ····· 99
[표 4-24]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의 중요도 ····· 100
[표 4-25]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의 중요도 ····· 101

그 림 목 차

[그림 3-1] 연구 절차 ····· 46

HANSUNG UNIVERSITY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생들의 일탈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교육적·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다변화하는 추세이다. 2023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의 응답률은 1.9%로 조사되었고 그 유형은 언어폭력 37.1%, 신체 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로 언어폭력이 여전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a).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 학교 내 폭력에서 사이버 공간의 폭력으로 그 무대가 바뀐 것뿐이다(이승현 외, 2015). SNS로 인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등은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김미정 외, 2024: 415).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는 개인 영역을 허물어뜨리고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기존의 학교폭력의 문제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 형태 또한 교묘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김미정 외, 2024:409).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 현장은 학교 내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구조로 심화되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화는 기존 체제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책임은 온전히 담임교사와 학생부장에게 있었다(정현진, 2025). 교원들은 수업과 같은 교육 업무 이외에 피해·가해 학생 및 학부모 면담, 학생 사실확인서 작성 지원, 보고서 작성 등 부가적인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 했다(정현진, 2025:44).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교원들이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라는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행정적 처리 과정의 과실을 따지는 소송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원들의 학교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권 침해로 이어지며, 일부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변국희, 2025:24). 이와 같은 상황은 전체 교원 공동체의 위기감을 촉발시키고 있다. 즉, 교원을 학교폭력 조사 업무와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여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 대응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성윤숙, 2024:11).

이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인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시각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이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 기존 책임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24년 3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고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1.2 연구의 목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도입되어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조사 권한 범위, 업무 경계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채로 출발하였다. 전담조사관 제도는 시범운영 없이 시행되었고, 전담조사관의 지위와 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폭력 사실확인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김주한, 2024). 이와 같은 이유로 2024년 3월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시행 초기 만족도가 낮고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 나타났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이 수업과 학생의 교육적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김주한, 2024). 그러나 학교폭력 증가로 인해 담당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교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도입된 지 1년 6개월에 불과한 이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 학술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요인을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출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식별하며, 이해관계자 집단별 인식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델파이 기법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도출된 요인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전담조사관·교육청 담당자·학교 책임교사 집단 간 요인의 중요도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 각 10명씩 총 30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차수별로 내용타당도(CVR), 합의도, 수렴도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일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기반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학술논문, 뉴스 기사, 기타 자료 등 2차 자료를 연구 수행에 활용하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식을 검토하여 한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비교하였다.

둘째, 논문의 연구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복잡한 제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3개로 나누어 총 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지는 ① 연구 분야 설명, ② 참여자의 기본 정보, ③ 참고 자료, ④ 델파이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델파이 조사지는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의 총 4개 분야 29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자료 분석은 SPSS 25.0 통계처리 프로

그램을 활용하였다.

셋째, 델파이 기법은 총 3차로 시행하였으며, 설문지 회수 후 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과 수정·삭제 및 보완 작업을 거쳐 2차 조사에 반영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였다. 2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설명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전후 과정을 기술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비교하였다. 3장은 연구설계 과정으로서 델파이 측정도구 초안과 전문가 그룹 구성, 측정도구의 범주화 그리고 델파이 기법을 설명하였다. 4장은 델파이 기법 설문 1차에서 3차까지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과 요인별 중요도, 합의도, 수렴도 등을 분석·제시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연구 목적과 관련된 이론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하였다.

HANSUNG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전담조사관 제도 현황

2.1.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이 중 사안 처리의 비중이 높은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로, '사이버 폭력'을 딥페이크 영상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체의 피해 수반 행위로 구체화하여 해석하고 있다.

법적 규정 외에도 학교폭력의 개념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술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윤태현, 2017). 초기의 연구들이 주로 물리적 폭력과 강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최근에는 권력의 불균형과 심리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 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아직 방어 능력이 미숙한 아동에 대해 심리적인 불안으로 확인되었다(김진한 외3, 2018: 19).

최근 학교폭력은 점차 흉포화 및 조직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이병환, 김경선, 2020: 13). 실무적 차원에서 교육부(2025a)는 이러한 진화하는 학교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 유형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강요, 스토킹, 금품갈취의 8대 분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은 언어적 매체를 통한 모욕 및 위협 행위이며, 집단따돌림은 다수에 의한 의도적이고 관계적인 배제 행위이다. 신체

폭력은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강요와 금품갈취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강제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이며, 스토킹은 원치 않는 접근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본 연구에서도 사안 처리의 실제성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범주를 이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사이버 폭력의 급증이다. 물리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폭력과 달리, 사이버 폭력은 디지털 매체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이병환, 김경선, 2020: 17). 일상화가 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학생들은 사이버 채팅을 사용하여 교묘하게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라는 신종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진한 외, 2018: 35). 가해 행위의 은밀성과 피해 기록의 영속성이라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띤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양상이 물리적 피해를 넘어 관계적, 디지털 영역으로 복잡하게 다변화됨에 따라, 사안 조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일선 교원들의 업무부담과 전문성 한계가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사안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지며, 기존의 교사 중심 사후 대응 체계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역량을 갖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확립이 행정적·정책적으로 절실히 요구된다.

2.1.2 학교폭력 현황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도별로 발표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2025년 2.5%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에서 5.0%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중학교는 0.8%에서 2.1%, 고등학교는 0.4%에서 0.7%로 전 학교급에 걸쳐 증가하였다. 가해 응답률 역시 2019년 0.6%에서 2025년 1.1%로 증가하였으나, 피해 응답률(2.5%)과 가해 응답률(1.1%) 간의 차이는 가해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2-1] 참조).

[표 2-1]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률(%)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피해(전체)	1.6	0.9	1.1	1.7	1.9	2.1	2.5
피해(초등학교)	3.6	1.8	2.5	3.8	3.9	4.2	5.0
피해(중학교)	0.8	0.5	0.4	0.9	1.3	1.6	2.1
피해(고등학교)	0.4	0.24	0.18	0.3	0.4	0.5	0.7
가해(전체)	0.6	0.3	0.4	0.6	1.0	1.0	1.1
가해(초등학교)	1.4	0.7	0.9	1.3	2.2	2.1	2.4
가해(중학교)	0.3	0.2	0.2	0.3	0.6	0.7	0.9
가해(고등학교)	0.1	0.1	0.04	0.05	0.08	0.1	0.1

※ 자료 : 교육부(2025b)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5년 언어폭력이 3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집단따돌림 16.4%, 신체 폭력 14.6%, 사이버 폭력 7.8%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은 0.4%P, 신체 폭력은 0.9%P 감소한 반면, 집단따돌림은 0.9%P, 사이버 폭력은 0.4%P 증가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의 양상이 물리적 형태에서 심리적·디지털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2] 참조).

[표 2-2] 연도별 피해유형별 비중(%)

구분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강요	스토킹	금품 갈취

25년	39.0	16.4	14.6	7.8	6.0	5.8	5.3	5.1
24년	39.4	15.5	15.5	7.4	5.9	5.7	5.3	5.4
23년	37.1	15.1	17.3	6.9	5.2	7.8	5.5	5.1
22년	41.8	13.3	14.6	9.6	4.3	5.3	5.7	5.4

※ 자료 : 교육부(2025b)

학교급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은 초등학교 38.4%, 중학교 39.7%, 고등학교 41.5%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단따돌림과 사이버 폭력 역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반면, 신체 폭력과 강요, 금품갈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의 양상이 물리적 형태에서 심리적·디지털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디지털화 사회현상과 기기 활용 증가가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표 2-3] 참조).

[표 2-3] 학교급별 피해유형별 비율(%)

구분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강요	스토킹	금품 갈취
초등학교	38.4	14.9	16.3	6.5	5.5	6.5	6.5	5.3
중학교	39.7	18.6	12.7	9.6	6.4	4.8	3.3	4.9
고등학교	41.5	19.0	9.9	10.8	7.3	4.3	3.3	4.0
전체	39.0	16.4	14.6	7.8	6.0	5.8	5.3	5.1

※ 자료 : 교육부(2025b)

학교폭력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가 27.5%로 뒤를 이었다. 전체 약 60%가량이 두 항목에 집중된다는 점은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학생들 간

관계적 갈등의 악순환을 시사하며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은 전체 6.1%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10.2%, 중학교 6.1%, 고등학교 2.2%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상황에 관련되지 않으려는 심리적 불안감과 학교생활의 개인화로 인한 목격 기회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목격 후 행동으로는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가 34.6%로 가장 높았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가 30.7%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수동적 자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표 2-4] 참조).

[표 2-4] 학교급별 목격 응답률 및 목격 후 행동(%)

구분	전체	초	중	고
목격 응답률	6.1	10.2	6.1	2.2
피해 학생 위로·도움	34.6	35.2	33.4	35.9
가해자를 말렸다	17.3	20.7	14.5	11.1
주변 어른에게 신고	16.2	16.4	15.5	16.7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30.7	26.7	35.3	35.3

※ 자료 : 교육부(2025b)

2.1.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개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초기 사실관계 조사를 전담하는 외부 전문가를 의미한다(교육부 2025a). 이 제도는 기존에 담당 교사가 수행하던 사안 조사 업무를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상담전문가 등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에게 이관함으로써, 사안 처리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사는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교육부, 2025a).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1조의 2에 명시되어 있다. 동조 제4항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문서열람, 관계인 출석·진술·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담당 교사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전담조사관의 자격요건은 ① 교원으로 재직하며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경찰로 재직하며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자, ④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된다. 임기는 1년이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교육부, 2025a).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피·가해 학생 면담 및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및 문서열람, 피·가해 관련 학생·목격 학생·관련 교사·보호자 등에 대한 출석·진술 요청,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 기구 및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셋째, 사례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한다. 넷째,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다(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5: 38). 이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법 제11조의2 제4항 및 가이드북에서 명시하듯이 전담조사관의 업무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교육적 절차'로서 사법적 기능이 아니며, 학교폭력 여부를 최종 판단하거나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 최종 결정은 전담 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2.1.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현황

2024년도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각 시도교육청이 위촉하여 개별 학교의 사안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사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교육부, 2024a). 본 제도의 인력은 퇴직 경찰, 퇴직 교원, 청소년 상담전문가, 기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기존 교원이 수행하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학생 및 학부모 면담을 담당하게 된다.

2024년 3월 29일 기준으로 [표 2-5]에서 보듯 전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위촉된 인원은 총 1,880명이며, 이중 퇴직 경찰 704명(37.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수사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인력이 구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퇴직 교원은 445명(23.7%)으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군으로서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및 담당 교사와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력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 상담전문가는 427명(22.7%)으로,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세 분야의 전문가를 복합적으로 위촉한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경찰의 수사력, 교원 교육 전문성, 상담가의 심리적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표 2-5] 시도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상황(단위: 명)

시도	총합	청소년 전문가	퇴직 경찰	퇴직 교원	기타
서울	178	0 (0.0%)	70 (39.3%)	59 (33.1%)	49 (27.5%)
경기	488	131 (26.8%)	198 (40.6%)	115 (23.6%)	44 (9.0%)
인천	62	0 (0.0%)	37 (59.7%)	7 (11.3%)	18 (29.0%)
부산	97	0 (0.0%)	49 (50.5%)	20 (20.6%)	28 (28.9%)
대구	91	48 (52.7%)	23 (25.3%)	20 (22.0%)	0 (0.0%)

광주	50	29 (58.0%)	10 (20.0%)	11 (22.0%)	0 (0.0%)
대전	25	4 (16.0%)	12 (48.0%)	8 (32.0%)	1 (4.0%)
울산	45	0 (0.0%)	18 (40.0%)	8 (17.8%)	19 (42.2%)
세종	22	5 (22.7%)	4 (18.2%)	5 (22.7%)	8 (36.4%)
강원	119	64 (53.8%)	23 (19.3%)	16 (13.4%)	16 (13.4%)
충북	74	12 (16.2%)	28 (37.8%)	20 (27.0%)	14 (18.9%)
충남	85	36 (42.4%)	38 (44.7%)	11 (12.9%)	0 (0.0%)
전북	104	19 (18.3%)	47 (45.2%)	38 (36.5%)	0 (0.0%)
전남	108	51 (47.2%)	34 (31.5%)	23 (21.3%)	0 (0.0%)
경북	155	0 (0.0%)	61 (39.4%)	46 (29.7%)	48 (31.0%)
경남	160	28 (17.5%)	44 (27.5%)	29 (18.1%)	59 (36.9%)
제주	17	0 (0.0%)	8 (47.1%)	9 (52.9%)	0 (0.0%)
총합	1,880	427 (22.7%)	704 (37.4%)	445 (23.7%)	304 (16.2%)

※ 자료 : 윤근혁(2024a)

그러나 전담조사관이 위촉직 신분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담조사관 제도의 주요 쟁점은 책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지만, 업무 경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고, 오히려 부수적인 업무가 증가했다는 점이다(이충민, 김대권, 2024:189). 한편, 전담조사관 권한과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충민, 김대권, 2024:194). 아울러 인력 구성이 교원·경찰 출신에 편중되어 심리·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2.1.5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책임교사와 피해·가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 간 갈등과 민원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서진경 외, 2020).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담당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접수되면 학교 책임교사는 신고접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피해·가해 관련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며, 최초 학생확인서를 접수하고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교육지원청은 사안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의 긴급성, 다문화·장애 여부, 학생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와 전담조사관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지원청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 수에 따라 전담조사관 1명 또는 2명 이상 배정한다.

배정된 전담조사관은 학교 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학교를 방문하고, 피해·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보호자 요청 시)를 면담한다. 면담 과정에서 추가 사안을 정리하고, 필요시 목격자(학생, 담임교사 등)를 면담하며, CCTV 영상·SNS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검토한다. 또한 의사, 변호사, 특수 교육 상담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전담 기구[1] 및 교육지원청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 센터[2]에 제출한다.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학교 전담 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2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이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며 교육지원청에 결과를 보고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이 이관되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1) 학교 전담기구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기구로,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며, 실태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대한 활동 결과 보고 등을 담당한다.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제4항·제5항).

2) 학교폭력 제로 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학생지원, 관계 회복, 법률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지원 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치가 이루어진다.

[표 2-6]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 및 전담조사관 배정&조사 절차

학교		학교폭력 제로 센터	
학교폭력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분석 및 조사관 배정	조사관 사안 조사
◇ 접수 /초기 대응 - 신고접수 대장기록 - 피해·가해 학생 상태 확인 - 최초 학생확인서 작성 후 접수 - 접수보고서 작성 - 학교장 보고 - 보호자 및 해당 학교 통보 ◇ 분리 / 긴급조치 (필요시) - 피해·가해 학생 분리 - 피해 학생 긴급조치 - 가해 학생 긴급조치 ◇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 접수보고서 - 신고 개요 - 피·가해 학생 상태 -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 - 조사관 배정요청 여부	→ 조사관 배정 요청	◇ 접수내용 분석 - 조사의 긴급성 - 다문화 장애 여부 - 관련 학교 - 학생의 연령 등 ◇ 조사관 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배정 적합성 검토 (저학년, 성별 등) - 배정 인원 (1명 또는 2명 이상)	◇ 학교 방문 -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 학생 작성확인서 접수 - 목격자 면담 (학생, 담임교사 등) - 증거 자료 인수 ◇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시) - 의사, 변호사, 특수 교육 상담전문가 등 ◇ 보고서 작성 (사안 조사보고서) - 사안 개요, 경위 ◇ 조사 결과 보고 - 전담 기구, 제로센터

※ 자료 : 교육부(2025a:9)

2020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전에는 각 학교 단위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의결하였으나, 개정 이후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되었다. 이는 학교 내부 구성원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위원 중심의 객관적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로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보호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는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장한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2024년 도입된 전담조사관은 조사와 면담을 통한 역할을 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의결을 하는 역할로 확인되었다.

2.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전후 사안 처리 절차 비교

전담조사관 도입 이전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가 사안 조사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담당 교사가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 완료 후 전담 기구와 학교장이 자체 해결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 학생 측이 동의를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하고, 미충족 시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구조였다.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요청 건수 약 6만 2천 건 중 59.4%에 해당하는 약3만 7천 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었다(교육부, 2023a).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0.3%, 중학교 50.1%, 고등학교 42.5% 순으로 자체 해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7]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 비교(%)

학급별	심의위원회 심의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
초등학교	8,029건(29.7%)	19,005건 (70.3%)	70.3%
***중학교**	12,015건(49.9%)	12,028건(50.1%)	50.1%
고등학교	5,248건(57.5%)	3,873건(42.5%)	42.5%
기타	108건(80.6%)	26건(19.4%)	19.4%
전체평균	25,292건(40.6%)	37,014건(59.4%)	59.4%

※ 자료 : 교육부(2023a)

초등학교의 자체 해결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 간 관계 미숙으로 인해 학교 내 교육적 처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학교의 경우 신체적 성숙에 비해 정서적 성숙이 미흡하여 신체 폭력 및 갈등 표출이 증가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용 방식 역시 학교급에 맞는 맞춤형 전문화가 필요하다.

2024년 전담조사관 도입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인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전담함으로써 절차가 더 체계화되었다. 전담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 전담 기구에서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한다.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한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며, 요건 미충족 또는 미동의 시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 센터로 사안이 이관된다.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서는 사례 회의를 통해 보고서 검토하고 필요시 전담조사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례 회의 완료 후 학교폭력 제로 센터장은 해당 학교에 결과를 통보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표 2-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단계	절차 내용	담당 주체
1단계	학교폭력 발생 및 신고·접수	담당 교사
2단계	신고접수 대장기록, 1차 학생확인서 접수, 접수보고서 및 학교장 보고	담당 교사
3단계	보호자 통보, 필요시 긴급조치, 교육지원청 사안 접수 보고	담당 교사
4단계	사안 내용 분석(긴급성·다문화·장애 여부·학생 상태 등), 전담조사관 배정 결정	교육지원청
***5단계**	**학교 방문, 피해·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증거자료 검토,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6단계	전담조사관 보고서 토대로 학교 자체 해결 여부 심의	학교 전담 기구·학교장
7단계	학교장 자체 해결 종결 및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장
8단계	요건 미충족·미동의 →사례 회의 및 보고서 검토	학교폭력 제로 센터
9단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학교폭력 제로 센터

※ 자료 : 교육부(2025a)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이처럼 전담조사관 도입 이전에는 담당 교사가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던 방식에서, 도입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조사를 기반으로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도입 전후의 사안 처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전후 사안 처리 절차 비교

절차 흐름	전담조사관 도입 전	전담조사관 도입 후
사안 접수	학교(책임교사, 담임교사)	학교(책임교사, 담임교사)
피·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조사	학교 내 전담 기구 (교감, 책임교사 등)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학교 내 전담 기구	학교 내 전담 기구 (조사관의 조사 결과 토대)
학교장 자체 해결 불가일 경우	학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학교폭력 제로 센터 사례회의 검토 후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심의 조치 결정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조치 이행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 자료 : 교육부(2025a)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2.1.7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이후의 반응 및 효과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건 오래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건 2023년 10월 6일 대통령과 교사들의 만남에서 시작된다(장재훈, 2023).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게 나섰다(김창학, 2024). 이처럼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교육계 전반에서 높은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위촉직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4년 5월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의 61%는 '학교의 부담이 완화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74.7%는 '조사관 방문 일정 조율, 조사 시 교사 동석 등으로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났다'라고 답하였다(좋은교사운동, 2024).

[표 2-10] 현장 교사가 제안하는 전담조사관 개선방안

설문 항목	주요 결과	질적 피드백
교원 업무부담에 미친 영향	· 부담 완화 안 됨 : 61% · 오히려 업무증가 : 74.7%	· 조사관·학부모 일정 조율, 교사 동석 요구 등 신규 행정업무 발생. · 학부모의 진행 상황문의에 대한 응대 책임가중
제도 운용의 가장 큰 어려움	· 교사 업무 증가 : 74.7% · 일정 조율 문제 : 70.1% · 사안 처리 지연 : 35.1%	· 외부 조사관 개입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전체 처리 기간이 길어짐. · 초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

※ 자료 : 좋은교사운동(2024:12)을 연구자가 재정리

전담조사관 제도의 목표는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었으나, 도입 초기에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학교와 학생·보호자 사이의 중간 매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담조사관의 일정 조율, 방문 준비, 협력 업무 등이 모두 담당 교사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개입하는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사안 처리 소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으며, 피해·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 모두 긴 절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관계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좋은교사운동, 2024).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접수한 후 배정된 전담조사관과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완료 후 보고서를 접수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기존 처리 절차보다 복잡해졌다. 이러한 절차의 지연은 피해·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 모두를 지치게 하고, 학교 내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 개입의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도 시행 초기 업무 분장 및 협력체계의 미비로 인해 학교는 행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담조사관 역시 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준비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4년 7월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후에도 담당 교사의 업무와 민원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는 현장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좋은교사운동, 2024). 이는 제도 도입 전부터 현직 교사들이 전담조사관 위촉에 우려를 제기했던 문제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2024년 전반기에는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전담조사관이 위촉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전담조사관의 역할 및 처우 개선 등을 지역 교육감에게 위임한 채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미흡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났다.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진행할 시 학부모의 민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 “트집 잡히고 비난받던 상황에서 벗어나…마음 편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24). 백승아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에서는 한 교사는 “조사관들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또 학생에게 확인서 질문리스트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라고 하며, 전담조사관이 조사할 경우 담당 교사보다 조사내용이 더 풍부하고 정확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신고를 하고,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통보 이후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우려가 있었으나, 2024년 8월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교육부·푸른나무재단·이화여대 학교폭력 예방연구소가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6일까지 교원 7,8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이후 42.7%가 ‘책임교사 업무 및 심리적 부담경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4.4%는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20.6%는 ‘사안 조사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를 주요 효과로 응답하였다(교육부, 2024b).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충청권 교사 51.7%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

생·학부모 민원 경감에 대해서도 57%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초등교사는 “예전엔 조사도 직접 하고 전담 기구에 보고도 해야 했으며 심지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증언도 했다”라며 “지난해 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 센터가 만들어지고 조사관제도가 도입되며 교사의 역할이 확실히 줄었다”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전담조사관과 학교 간 협력 및 소통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충청권 교사들은 외부 인력 투입으로 인한 소통의 한계를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최윤서, 2025).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와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줄어들어 긍정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 ‘2024년 학교폭력 제로 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2024년 8월 28일에서 9월 6일까지의 교원 7,89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의 효과

구분	책임교사 업무 및 심리적 부담경감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적 제고	사안 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	학교폭력에 대한 높아진 경각심
응답 비율	42.7%	24.4%	20.6%	6.3%

※ 자료 : 교육부(2024b). 만족도 조사 결과(2024.8.28.~9.6. 교원 7,897명 응답, 이화여대 학교폭력 예방연구소)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 후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폭력 담당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연합뉴스, 2024). 한편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사안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학교에서 필요한 피해 학생의 교육적 지원과 심리적 회복을 제공하는 기회가 늦어지고 가해 학생 또한 지도·선도 교육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박상철, 2025). 이에 따라 전담조사관

의 역할 범위와 학교 간 협력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1.8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조사·처리 제도 분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조사·처리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국이 학교폭력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누가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은 향후 한국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2.1.8.1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주체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주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2-12] 과 같다.

[표 2-12]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제도

분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주체
한국	- 퇴직 경찰, 퇴직 교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미국	- 명확하지 않음(학교 자원담당관 상주)
캐나다	- 학교장 또는 교육부 등재 인물
영국	- 교장, 교감, 교감보 등 리더급 교원
독일	- 교원(학교 수준 사안), 현직 경찰(신고된 사안)
프랑스	- 중·고등학교는 교원, 초등학교는 교육구별 장학사 등 전일제 임명
덴마크	- 교원
일본	- 교원 또는 설립자

※ 자료 : 윤근혁(2024b)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7개국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제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같이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을 외부 조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조사 대상국 중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윤근혁, 2024b). 대부분 국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교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 해당하거나 신고된 중대 사안의 경우에만 현직 경찰이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학교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외부 인력을 투입하여 학교폭력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여 사안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교육적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학교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이 개입할 때 교육적 화해나 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윤근혁, 2024b).

김상곤 외(2013)는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 있어, 국가 책임하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예방을 목표로 삼으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제3의 외부 전담조사관이 아닌 학교장 또는 교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윤숙, 2024).

2.1.8.2 해외 주요 국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대한민국은 2024년부터 도입된 전담조사관이 학교에 파견되어 사안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청 중심의 외부 개입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교와 교사를 사안 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외부 기구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학교폭력 조사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며, 각 주와 학군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보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관리자 주도로 피해 및 가해 학생 면담과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교직원 및 목격자 조사를 병행한다. 이후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와 학생 간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징적인 점은 경우에 따라 학생의 부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자살한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 비행 방조죄로 체포된 사례도 있다(조현정, 2017).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학교 내부 관리자가 법적 책임하에 직접 수행하는 분권화된 내부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김성수, 이수정, 2022).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는 학습권 침해를 시민권 침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다만, 이러한 내부 조사방식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며, 조사자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성수, 이수정, 2022).

독일은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와 사법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적인 학교폭력 사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담당하며, 담당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성윤숙, 2024). 다만,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하는 사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승현 외, 2014).

독일은 한국과 같은 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 대신 학교사회복지사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교사, 심리상담사, 지역 경찰, 문화시설, 청소년 기관 등이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김상곤 외, 2013). 독일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는 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 지원 시스템이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에 중점을 둔다(임혜진, 2021). 이러한 방식은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성윤숙, 2024).

영국은 국가의 최소 개입 원칙에 따라 각 학교가 법적 의무에 근거하여 '괴롭힘 방지 정책(Anti-Bullying Policy)'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교장에게 있으며, 학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책에 따라 교직원이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중점에 둔다(박현정, 2021: 105).

한편 영국은 학교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2002년 "안전한 학교 협력사업(Safer Schools Partnership)"을 도입하여 학교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683명에서 2023년 979명으로 43% 증가하였다(정은수, 2023).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안 조사가 아닌 예방과 상담을 담당하며, 학생들이 학교나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안전한 존재로 기능한다. 배치 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런던 지역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 배치되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취약 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는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또한 지역 간 소득 격차와 다문화 학생 증가로 학교폭력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 학생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에는 한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같은 명칭이나 퇴직 경찰, 퇴직 교원 등을 위촉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윤근혁, 2024b). 일본은 학교폭력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관중과 방관자를 포함한 학급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파악한다(정재준, 2012).

일본의 제도는 한국과 달리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외부 인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 학교폭력 사안은 교원이 담당하되 담당 교사가 심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도록 업무중복을 금지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윤근혁, 2024b), 중대 사안에 한해서는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변호사·의사 등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청소년 정책분석평가센터, 2013). 이는 사안의 성격에 따른 차등적 대응 체계를 통해 학교의 교육적 자율성과 외부 전문성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표 2-13]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조사제도 비교

국가	조사 주체	운영 방식	특징
한국	교육청 전담조사관	외부 조사관 파견	조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학교 부담경감
미국	학교 관리자	학교 내부 관리자가 법적 책임하에 직접 조사	분권화된 내부 시스템, 학습권을 시민권 침해로 접근
독일	학교 교원 + 사법기관	일상 사안은 학교, 중대 사안은 경찰 개입	단계별 차등 대응, 교육 지원 시스템 중심
영국	학교 교장·교직원	학교 자체 정책에 따라 내부 처리	국가 최소 개입 원칙, 관계 회복 중심
일본	학교 내부 + 외부 조사위원회	일반 사안은 학교, 중대 사안은 외부 전문가 조사위원회 구성	학교 자율성과 외부 전문성의 균형

※ 자료 :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한국의 전담조사관 제도와 같이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점은 한국의 교육이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민원, 교권 침해 등 한국 교육 현장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제도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없으며 학교폭력의 조사 공정성·객관성, 교육적 관계 회복, 학교 자율성과 외부 전문성이라는 가치를 한국 제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탐색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만 운영하는 전담조사관 제도인 만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중요함을 말한다.

2.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2024년 제도가 도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아직 충분한 연구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

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 수준의 심층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채우는데 그 의의가 있다[3].

선행연구 분석은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된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근거와 현장 상황을 접하고 있는 실무 내용을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된 학술논문,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보고서, 기사자료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제도의 발전 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설문조사 및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2.1 선행 연구별 주요 요인 고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2024년에 도입된 신설 제도로, 관련 선행연구가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현장의 논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한 영향요인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이에 2024년 이후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자료를 중심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제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성윤숙(2024)의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초기 시행 현황을 전국적 규모로 진단하고, 교육 주체들의 실질적인 수용성을 분석하여 제도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연구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제도 운영실태와 교원 및 전담조사관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정책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전담조사관 도입은 교원의 사안 처리 업무부담을 유의미하게 경감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전담함

3)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기관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도입 전후 관련 중간 평가가 진행되었고, 박사학위로는 관련 논문이 출간된 적은 없으나, 석사학위로 일부 연구가 이뤄졌다.

으로써 기존 학교 자체 조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절차적 공정성 시비와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제 3자 개입을 통한 객관성 확보가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주요 기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 운용상의 실무적 한계 또한 명확히 지적되었다.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현장 수용성의 한계가 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위험요인임을 규명하였다. 특히 전담조사관이 마주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법적 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도화된 연수 프로그램 구축과 함께, 전담조사관의 신변 보호 및 권한 보장을 위한 정책적 기제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주한(2024)의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2차례의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객관성·신뢰성, 전문성·안정성, 신속성·합리성, 교육목적 일치의 네 가지 범주에서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객관성·신뢰성 측면에서는 외부 전문가인 전담조사관의 개입이 기존 교사 중심 조사에서 빈번히 제기되었던 공정성 시비와 학부모 불신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서 목격자 진술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전담조사관제도 시행 이후 참고인 학생들의 진술 거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전문성·안정성 측면에서는 퇴직경찰관과 퇴직 교원이 아동·청소년 조사에 특화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학생 대상 조사역량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1년 단위 위촉직이라는 고용 불안정 구조와 사안 건수 기반의 수당 체계가 우수 인력 유입을 저해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속성·합리성 측면에서는 사례 회의 절차 추가로 인한 사안 처리 기간 증가와 이에 따른 가해·피해 학생의 심리적 부담 가중이 우려되었다. 교육목적 일치 측면에서는 사법 우선주의적 조사방

식이 학교폭력예방법의 본래 목적인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관계 회복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완 대책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실 내 CCTV 설치 및 강력 사안의 경우 전담조사관 2인 이상 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보호자 동석 조사제도 마련과 교육학 전공 또는 아동심리 교육을 이수한 전담조사관의 별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전담조사관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사안 건수 기반 수당에서 월정액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공정한 조사 수행을 위해 전담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 종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사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과 화해 의지에 관한 상담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예측된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목격 학생 진술 확보의 한계, 전담조사관의 신분 불안정과 처우 문제, 사법 우선주의와 교육목적 간의 충돌 등을 확인하였다.

박영경(2025)의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도 도입 이후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겪는 실질적인 경험과 체감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인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 온 교사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총 3개 영역, 7개 범주, 23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교사들은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반복적인 서류 업무를 전담조사관이 담당함으로써 업무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예방교육과 추후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전담조사관의 개입으로 학부모 민원 대응 부담이 완화되고, 보호자의 조사 참여가 활발해지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는 조사 일정 조율, 공간확보, 관련 서류 전달 등 부수적인 행정 처리 업무가 여전히 교사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목격 학생 진술 확보의 어려움, 전담조사관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조사 기간 지연,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한 논란, 학교 내 조사 공간 부족 등이 현장

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입 초기 체계적인 지침 및 준비과정이 미흡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조사 관련 업무 전반을 전담조사관이 일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정착, 교내 상주 인력으로서의 전담조사관 배치,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법적 보호 장치 마련, 학교 밖 조사 공간(거점센터 등) 확보,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시되었다.

김석건, 강동욱(2025)의 연구는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용실태를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시행령에 대한 법령 분석과 현장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한 법학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네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권한·책임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2에서 전담조사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권한 행사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조사 착수 지연과 문서 처리 중복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 중복 문제이다. 단계별 보고서 입력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며, 전담조사관이 평균 14일을 문서 작성에만 소요하는 등 행정부담이 과중한 실태를 규명하였다. 셋째, 전문성 편중 문제이다. 전담조사관의 구성이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중심으로 편중되어 심리·법률·디지털포렌식 등 필수 전문 영역에서의 역량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넷째, 처우 불균형 문제이다. 교육지원청별 수당과 위촉 기간의 편차가 커서 이직률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 진단을 토대로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전담조사관의 권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협조 거부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 전산 관리 포털과 AI 기반 디지털 증거 분석 도구를 도입하여 접수에서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가속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분야별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연간 40시간 이상의 의무 연수를

제도화하여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넷째, 전국단위의 통일된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 기반 재위촉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신분 보장 또는 공무직 전환 등을 검토할 것을 제언하였다.

윤혜원 외(2025)의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저해 요인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담조사관, 학교폭력 담당 교육 전문직 및 학교 관리자,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네 개 그룹, 총 1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수정 근거 이론 접근법을 활용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저해 요인은 위촉, 배정, 사안 처리의 세 범주에서 총 7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적정 규모의 전담조사관 인력 수급 미흡이 지적되었다. 전담조사관 수가 부족할 경우 사안 처리 지연을, 반대로 과도하게 많을 경우 전담조사관 전문성 향상의 기회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위촉 제도에 의한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1년 단위 위촉 기간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고 중도 탈락을 유발하며,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질적 권한 행사와 악성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수당 체계의 불합리성 문제가 확인되었다. 사안의 경중과 조사 난이도를 반영하지 않은 일원화된 수당 기준, 지역별 수당 편차, 명세서 미제공 등이 조사관의 동기 저하와 우수 인력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조사관 배정 방식의 이분법적 딜레마가 도출되었다. 조사관들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순차적 배정을 선호한 반면, 학교 및 교육청 측은 사안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배정을 선호하여 두 방식 간 구조적 갈등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전담조사관 배정 절차의 비투명성이 지적되었다. 배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전담조사관과 학교 모두 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고, 배정된 조사관에 대한 신뢰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전담조사관 역량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은 연수 문제가 확인되었다. 단기 집중 연수 이후 추가 연수가 부재하거나, 전담조사관의 다양한 배경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연수로 인해 현장 적용 역량 향상에 한계가 있었다. 일곱째, 전담조사관 매뉴얼의 현장 미보급 문제가 도출되었다. 국가 차원의 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보급되

지 않아 조사 기한, 교사 동석 여부, 역할 분장 등 세부 실무 절차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저해 요인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으로 전담조사관 인력 규모의 적정화, 고용의 안정성 보장, 수당 체계의 합리화를, 배정 측면에서 전담조사관 배정 시스템 확립과 전담 학교의 최소화를, 사안 처리 측면에서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의 내실화 확대, 전담조사관 매뉴얼의 체계적 정비 및 현장 보급을 제안하였다.

이지영, 김형빈(2025)의 연구는 상담심리 전문가이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한 연구자의 경험으로 자문화기술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역할 갈등의 회복적 실천과 구체적 양상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성찰 일지, 조사 기록, 비공식 면담 메모, 정책 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현장에서 제도의 한계를 경험하고 회복적 실천으로 지속적인 제도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전담조사관은 사실 확인을 넘어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상담자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 면담에서는 진술 확보와 정서적 공감 사이의 균형 유지가 요구되었으며, 공감적 접근이 진술의 진정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가해 학생 면담에서는 책임 추궁보다 방어기제 이면의 감정을 이해하는 접근이 요구되었고, 이는 가해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의 정서적 영향을 인식하게 하는 회복적 정의의 실천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보호자 면담에서는 수용·방어·회피 등 상반된 보호자의 정서 반응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가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담조사관은 중립적 조사자를 넘어 정서적 조율자로 기능해야 했다. 한편, 제도와 현장 간의 구조적 괴리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담조사관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학생을 둘러싼 살아 있는 정서와 관계의 역동을 담아내지 못하며, 표준화된 보고서 작성 기한과 절차적 요구는 정서 중심의 접근과 충돌하였다. 또한 위촉직이라는 고용 불안정 구조는 감정노동의 부담을 조사관 개인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만들어진 정서적 소진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전담조사관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서적 실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과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서 조절 능력·갈등 중재력·관계 해석력 등 회복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슈퍼비전과 동

료 지지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과 정기적 역량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사건 종결 중심에서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회복 대화·재통합 프로그램 등 사후 개입을 제도에 내재화해야 한다.

현정원, 한유경(2025)의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전담조사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담당자(장학사, 주무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확인되었다.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높고 교원의 업무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응대 감소에 따른 책임교사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었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사안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시도교육청의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 이상 응답이 80~95%에 달하였으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악성 민원 감소, 교사의 교육적 업무 집중도 향상이 공통적인 성과로 보고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전담조사관 방문 요청 및 일정 조율의 어려움, 보고서 미비로 인한 조사 보완 요청 등 현장 지연 문제가 있었으나, 역량 강화 연수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구조적 한계로는 전담조사관 제도 운용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 발생으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업무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전담조사관 출신 배경에 따른 역량 차이 문제도 현장의 주요 불만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역할 명료화 문제도 제기되었다.

전담조사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지식, 실천, 태도의 세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지식 역량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체계적 이해, 학생 발달 단계와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 딥페이크·사이버 폭력 등 신유형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역량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 역량으로는 객관적 사실 확인 능력,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능력, 학생·학부모와의 공감

적 의사소통 능력, 디지털 활용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업무 담당자들은 퇴직 경찰 출신은 보고서 작성에 강점이 있는 반면 학생과의 의사소통에서 취조식 접근 문제가, 퇴직 교원 출신은 소통에 강점이 있으나 보고서 작성에 한계가, 상담사 출신은 공감 형성에 강점이 있으나 지나친 공감으로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여 유형별 전문가 채용 및 위촉 심사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태도 역량으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자세, 교육적 관점 유지, 공감 능력, 자기 관리 및 지속적 자기 계발 의지가 강조되었다. 이에 개선방안은 첫째, 전담조사관 수 충원과 함께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체계화, 둘째, 전담조사관의 역할과 책임교사의 역할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기준 마련, 셋째, 전담조사관의 고용 형태 개선, 수당 인상, 법적 권한 부여 등 처우 개선, 넷째, 제도의 안정적 유지 및 확대가 제시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사안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으며, 현장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전담조사관의 신분 불안정과 불합리한 처우 체계, 역할 정체성 혼란, 학교 책임교사와의 업무 경계 불명확성, 조사 일정 조율·공간 확보 등 부수적 행정업무의 교사 집중, 출신 배경에 따른 역량 편차와 연수 체계의 미흡함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들을 공통된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의 4개 항목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다. 각 선행연구별 주요 요인과 해당 항목의 연결 현황은 [표 2-14]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2.3절에서 4개 항목 32개 초기 요인을 구체화하여 도출하였다.

[표 2-14] 선행연구 별 주요 요인 및 항목 분류 현황

관련 발전 내용	연구자 (연도)	연구 제목	주요 요인
공정성·수용	성윤숙	학교폭력 전담	- 업무부담 경감, 절차적 공정성, 객관

도, 직무역량·전문성, 안정성·지위 보장	(2024)	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연구	성 확보, 전문성, 신뢰도, 지속적인 연수 와 교육 필요, 사안 처리 일원화, 법적 분쟁 위협, 전담조사관 권한 보장, 매뉴얼 보급, 처우 개선
공정성·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	김주한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현장 근무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 객관성·신뢰성·공정성, 목격자 진술 확보, 조사 공간 및 환경 확보, 특화된 전문가, 1년 단위 위촉직, 전담조사관 역량 한계, 신속성·합리성, 배정 및 사안 처리 기간 단축, 분야별 전문가 필요, 보수 체계와 처우 개선, 경미한 사안 학교장 자체 종결, 화해·중재 권한 부여
공정성·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	박영경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경험 연구 : 합의적 질적 연구	- 전문성과 공정성, 체계적인 지침 미흡, 조사과정의 중복, 조사 일정 조율, 전담조사관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교내 조사 공간확보, 조사 관련 업무 전담조사관이 일임하여 처리, 교내 상주 인력 필요, 법적 지위 보장, 조사 거점센터 구축. 전문성 역량 강화
공정성·수용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	김석건, 강동욱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 법적 권한·책임 명확화,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 절차 복잡성 및 행정 중복,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성 향상, 처우 기준 통일 및 고용 안정성 확보, 피해 학생 보호 기능 강화
공정성·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윤혜원 외 (2025)	FGI를 활용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저해 요인과 개선방안 분석	- 맞춤형 학교 배정, 전담조사관 배정 절차 투명성 확보, 인력 수급 인원 적정화, 매뉴얼 정비, 배정 시스템 확립, 맞춤형 연수 확대, 역량 강화 연수 내실화, 맞춤형 전문가 배정, 고용 불안정성, 법적 지위 모호, 수당 체계 합리화, 고용 안정성 및 위촉 기간 연장
공정성·수용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이지영, 김형빈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 상담자-조사관 역할 갈등 중심으로	- 중립성·공감 충돌, 절차적 공정성 유지, 사실 확인, 신뢰 기반 면담, 보호자·교사와의 관계 조율, 회복적 역량 제도화 필요, 제도와 현장 괴리 인식, 정서적 민감성, 감정 조율, 슈퍼비전 필요, 역할모호성과 제도적 정체성 혼란, 위촉 불안정 구조, 지속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체계 필요
공정성·수용	현정원,	학교폭력 전담	- 사안 조사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

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한유경 (2025)	조사관제도 운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에 대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인식분석	보,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민원 감소, 시도교육청 행정업무 증가, 전담조사관 역량 차이 문제, 학교폭력 법령·절차 지식, 학생·학교 문화 이해, 의사소통·공감 역량, 보고서 작성 역량, 디지털 활용 능력, 중립적·공정한 태도, 출신별 역량 차이, 연수 확대 필요, 역할 명료화 필요, 고용 형태·처우 개선 필요, 수당 인상 및 법적 권한 부여, 딥페이크·사이버 폭력 대응 역량

※ 자료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2.2.2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방향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책임교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해외 주요 국가에는 전담조사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 연구가 어렵고, 국내에서도 제도 시행 기간이 2년 정도로 충분한 연구 축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담조사관 제도는 시행 이후 현장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담조사관·교육청 담당자·책임교사 세 집단을 동시에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각 집단의 인식과 우선순위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2024년 이후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 요인들을 4개 항목으로 체계화하고, 델파이 기법을 통해 각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설정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행정학적 이론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는 충분한 현장 협의 없이 도입된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정책수용성 및 절차적 공정성 이론과 연결되며,

업무부담 및 범위는 역할 경계의 불명확으로 인해 일선 현장의 행위자들이 겪는 혼란을 설명하는 일선관료제 및 역할갈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직무역량 및 전문성은 과거 경력이 현장 역량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는 역량 이론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은 법적 신분 불명확과 위촉직 구조가 역할모호성과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역할모호성 및 제도적 지속가능성 개념과 각각 연결된다. 이를 통해 행정학적 분야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관한 이론 기반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2024년 도입된 신설 제도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로서, 향후 제도 안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2.3 발전 방안 도출의 이론적 근거

이 절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델파이 분석 결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관련 이론을 고찰한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네 가지 주요 항목인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 각각에 대응하는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 이를 전담조사관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발전 요인을 분석하는 학술적 근거로 활용한다.

2.2.3.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정책 수용성(Policy Acceptance)이란 정부나 권위 있는 행정기관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특정 정책에 대하여, 정책 대상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심리적으로 동의하고 행동으로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정정길 외, 2024).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대상자의 내면화된 동의와 능동적 참여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의 본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용성 확보는 정책 성공을 결정짓는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Davis(1989)가 제안한 기술 수용 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대상자가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시한다. 또한 Tyler(1990)의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 모형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가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보장받고 절차가 투명하다고 느낄 때 수용성은 극대화된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장 수용도는 공정성 확보, 객관성 담보, 조사 신뢰도, 학교 현장 안정화, 의사소통 강화,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전담조사관 배정 절차 투명성 확보의 형태로 구체화 된다. 사안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학생·학부모의 제도 수용성이 저하되어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관한 발전 요인을 도출하는 분석 틀로 활용한다.

2.2.3.2 업무부담 및 범위

업무부담이란 수업 외적인 각종 행정적 잡무에 대한 부담으로,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을 의미한다(이지혜, 이인회, 2010). 업무는 교육 본연의 업무와 각종 행정적 잡무로 구분되는데, 과중한 업무부담은 전문성을 훼손하며 결국 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지혜, 이인회(2010)의 연구에 의하면, 업무부담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순차적으로 조직몰입 약화, 전문성 저하, 학교 교육 성과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쇄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업무부담이 줄어들면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으로 이어져 결국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 성과 향상으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업무 범위의 명확한 설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과제이다. 최종윤 외(2012)는 외부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전담조사관제도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을 경우 역할 혼선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태는 강도 높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외부 위촉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는 각종 사고·피해의 원인과 책임조사, 증거 확보, 소재 불명자 소재 파악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담조사관 제도의 업무부담 및 범위는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교사 교육활동 조성, 행정업무 이관, 역할 중복 해소, 교사 동석 여부 기준 마련,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전담조사관의 인력 적정 수급의 형태로 구체화한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교사의 동석 요구나 역할 중복이 지속된다면 업무부담이 경감되지 않아 직무만족 저하와 전문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업무부담 및 범위 조정에 관한 발전 요인을 도출하는 분석 틀로 활용한다.

2.2.3.3 직무역량 및 전문성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역량(Competency)은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결정짓는 변수로 다루어진다. 역량이란 특정 직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의미하며(McClelland, 1973), 단순한 학력이나 자격증이 아닌 실제 직무 현장에서 발현되는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된다. 교육 현장에서의 직무역량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정제영 외(2014)는 역량으로 실제 문제해결력, 관계 형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작업 능력, 갈등 관리 능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신임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직무역량이 자동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며, 현직교육 강화와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퇴직 교원·퇴직 경찰·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사관

은 과거의 직업 경력이 학교 현장이라는 교육적 맥락에서의 전문성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단순한 수사나 행정 처리가 아니라 피·가해 학생들과의 면담, 학부모와의 소통, 갈등 중재 등 고도의 복합적 역량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이다. 따라서 전담조사관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은 전문성 향상,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사이버 폭력·성폭력 등 유형별 조사역량, 지속적 보수 교육, 상담 및 소통 역량, 체계적 지침과 연수의 형태로 구체화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전담조사관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발전 요인을 도출하는 분석 틀로 활용한다.

2.2.3.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Rizzo, House & Lirtzman(1970)에 따르면, 역할 갈등(Role Conflict)은 조직 내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둘 이상의 역할 기대가 상충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 상태를 의미하며,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 성과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모호성은 목표 모호성, 과업 모호성, 책임·권한의 모호성 등 다차원적인 형태로 발현되며(Miles & Perreault, 1976), 두 개념 모두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담조사관 제도의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은 법적 신분 보장, 보수 체계 처우 개선, 법적 분쟁 보호, 근무 형태 개선, 화해·중재 권한 부여, 통일된 매뉴얼, 제도 유지·확대, 슈퍼비전·동료 지지체계의 형태로 구체화한다. 전담조사관은 불분명한 법적 지위로 인한 역할모호성과 학교·교육청 사이의 중간자적 위치로 인한 역할 갈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 운영의 구조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izzo, et al., 1970). Lipsky(1980)는 일선 관료가 명확한 지침 없이 재량에 의존할수록 역할모호성과 갈등이 심화하며, 예측 가능한 통일된 업무 지침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관한 발전 요인을 도출하는 분석 틀로 활용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종합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요인은 다음 4개 항목으로 도출할 수 있다.

[표 2-15] 4개 항목별 이론적 근거

항목	이론적 근거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Davis(1989) 기술수용모델(TAM), Tyler(1990) 절차적 공정성 이론 – 제도 수용을 위한 공정성·신뢰 확보필요.
업무부담 및 범위	이지혜·이인회(2010) 업무부담 이론 – 업무부담 경감이 직무 만족·전문성 향상으로 연결.
직무 역량 및 전문성	McClelland(1973) 역량 이론 – 경력보다 현장 중심 역량 기반 접근 필요.
안정성 및 지위 보장	Rizzo et al.(1970) 역할 갈등·모호성, Lipsky(1980) 일선 관료제 – 불명확한 법적 지위가 역할 갈등 심화.

※ 자료 :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자가 구성

2.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주요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들을 공통된 성격에 따라 4개의 주요 항목과 32개의 세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발전 요인은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전문가 집단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제도 발전 방안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증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표 2-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발전 방향을 위한 요인 종합

항목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순번	요인	근거 선행연구
1-1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성윤숙(2024), 김주한

	처리는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2024), 현정원, 한유경(2025)
1-2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	성윤숙(2024), 현정원, 한유경(2025)
1-3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함.	성윤숙(2024), 현정원, 한유경(2025)
1-4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어야 함.	현정원, 한유경(2025)
1-5	전담조사관과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현정원, 한유경(2025), 윤혜원 외(2025)
1-6	학교 내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위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박영경(2025)
1-7	학교 외부에 전문 조사 공간(거점센터 등)이 마련되어야 함.	박영경(2025)
1-8	전담조사관 배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윤혜원 외(2025)

※ 자료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항목 2. 업무부담 및 범위

순번	요인	근거 선행연구
2-1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책임교사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어야 함.	성윤숙(2024), 박영경(2025), 현정원, 한유경(2025)
2-2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성윤숙(2024), 박영경(2025)
2-3	조사 관련 부수적 행정업무(일정 조율 등)는 전담조사관에게 이관되어야 함.	박영경(2025), 윤혜원 외(2025)
2-4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역할 중복이 해소되어야 함.	박영경(2025), 윤혜원 외(2025)
2-5	전담조사관 면담 시 교사 동석 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윤혜원 외(2025)
2-6	전담조사관은 사안 접수 초기 단계부터 투	윤혜원 외(2025)

	입되어야 함.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김주한(2024)
2-8	전담조사관 인력이 적정 규모로 수급되어야 함.	윤혜원 외(2025)

※ 자료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항목 3. 직무역량 및 전문성

순번	요인	근거 선행연구
3-1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성윤숙(2024), 현정원, 한유경(2025)
3-2	전담조사관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현정원, 한유경(2025)
3-3	전담조사관은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특수 유형에 대한 조사역량을 갖추어야 함.	김석건, 강동욱(2025), 현정원, 한유경(2025)
3-4	전담조사관의역량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윤혜원 외(2025), 김석건, 강동욱(2025)
3-5	전담조사관은 상담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갖춰야 함.	이지영, 김형빈(2025), 현정원, 한유경(2025)
3-6	전담조사관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윤혜원 외(2025), 김석건, 강동욱(2025)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가 개선되어야 함.	윤혜원 외(2025)
3-8	사안 유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채용되어야 함.	김주한(2024), 김석건, 강동욱(2025)

※ 자료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항목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순번	요인	근거 선행연구

4-1	전담조사관의 권한과 책임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김석건, 강동욱(2025), 이지영, 김형빈(2025)
4-2	전담조사관의 보수 체계 및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	김주한(2024), 윤혜원 외(2025), 김석건, 강동욱(2025)
4-3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적 분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성윤숙(2024), 박영경(2025)
4-4	전담조사관의 근무 형태(위촉 기간, 고용 안정성 등)가 개선되어야 함.	김주한(2024), 윤혜원 외(2025), 이지영, 김형빈(2025)
4-5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전담조사관에게 화해·중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김주한(2024)
4-6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윤혜원 외(2025), 이지영, 김형빈(2025), 김석건, 강동욱(2025)
4-7	전담조사관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어야 함.	현정원, 한유경(2025)
4-8	전담조사관을 위한 정기적 슈퍼비전 및 동료 지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이지영, 김형빈(2025)

※ 자료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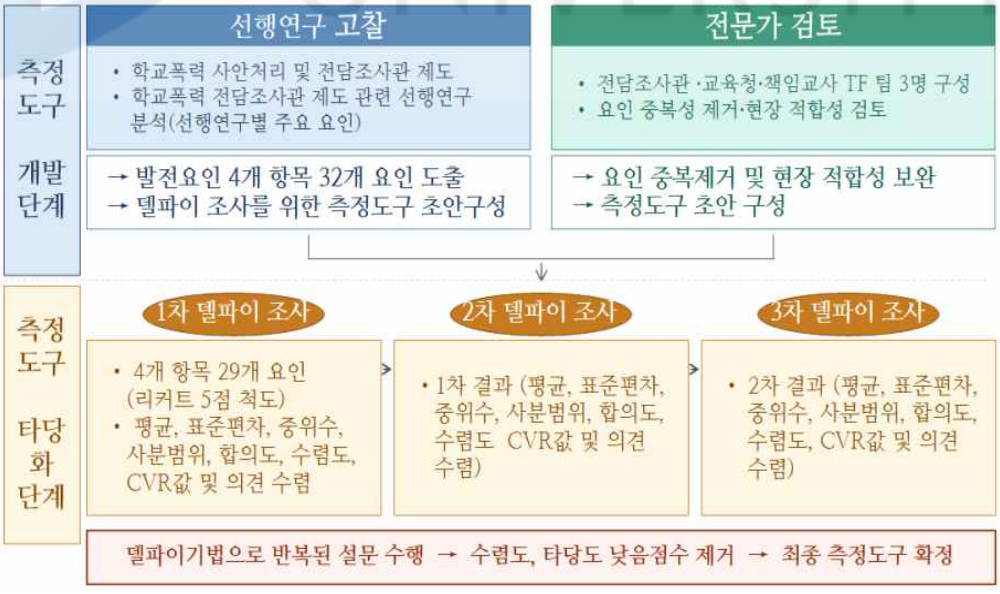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담조사관 제도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법적 지위 보장의 4개 항목과 32개 세부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들은 단일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쟁점들을 공통된 성격에 따라 체계화한 것으로, 제도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타당성을 갖는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델파이 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 문항을 확정하고, 전문가 집단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제도 발전 방안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 절차 개요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안연구를 위해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발전 방안의 주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측정도구는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단계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3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진행 절차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절차



※ 자료 : 연구 절차 구성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3.1.1 측정도구 초안 개발 단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측정도구 초안을 개발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운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개념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제도 도입 이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관련 기사, 학술연구 자료, 기관 연구보고서 및 학위논문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32개의 초기 요인을 도출하고, 4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도출된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와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전문가 협의체(TF)를 구성하였다. TF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폭력 책임교사 중 본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하였다. TF의 교차 검토를 통해 요인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요인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4개 항목, 29개 요인으로 확정하였다.

[표 3-1] 초기 요인 검토 및 델파이 조사 문항 확정 현황

항목	삭제 요인	삭제 사유	확정 요인 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전담조사관 배정(1-8)	전담조사관 배정은 교육청 담당자의 고유 행정 업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제외	7개
업무부담 및 범위	인력 적정 규모(2-8)	1년 단위 위촉직 신분 구조상 적정 인력 규모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제외.	7개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없음.	없음.	8개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슈퍼비전·동료지지 체계(4-8)	1년 단위 위촉직으로 별도 수당 없이 정기적 슈퍼비전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제외.	7개
합계	3개 삭제		29개

※ 전문가 TF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기존 선행연구들이 교사, 교육청 담당자, 전담조사관 등 특정 집단을 개별적으로 다루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전담조사관과 교육청 담당자 그리고 학교 책임교사 세 집단의 관점을 동시에 반영한 통합적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3.1.2 측정도구 타당화 단계

측정도구 초안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복잡한 정책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Dalkey, 1969).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학술자료와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술자료와 함께,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이춘식, 2014).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고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델파이 기법에서는 1차 설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설문 참여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진철 외, 2021).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각 단계를 ‘라운드(round)’라고 한다(Dalkey, 1969).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측정도구 초안에 대한 중요도 평가 및 추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각 항목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제시하여 의견을 재수렴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이전 라운드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렴도와 합의도를 산출하여,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거나 전문가 간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항목은

기각하고 최종 발전 방안 요인을 확정하였다.

3.2 조사 방법

3.2.1 전문가 집단 구성

본 제도는 2024년 도입 이후 아직 충분한 운영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으며, 복합적 정책 영역에 해당한다. 이처럼 근거가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 사안의 경우,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 전략이 될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전문가의 주관적 식견을 익명성과 반복적 피드백 구조를 통해 집단적 합의로 전환시키는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노승용, 2006:53-62). 특히 한 장소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을 동시에 참여시킬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

전문가 패널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전문가 수가 많을수록 집단 판단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이 있으나(Dalkey et al., 1970), 15명 수준이면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성웅, 198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최소 10인 이상의 전문가를 구성하되, 시각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를 포함하였다.

전문가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목적 표집 방식을 활용하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선별하였으며, 제도의 문제의식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서적과 기사, 학술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였고, 유선 통화를 통해 연구의 의도와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다.

본 델파이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첫

째,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시·도 교육청에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총 60건 이상의 사안 조사 경험을 보유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전담조사관은 전직 경찰, 교원, 청소년 상담사, 화해·중재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배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사안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둘째,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한 교육청 장학사 및 주무관 10명을 구성하였다. 교육청 담당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간사 업무를 담당하며 전담조사관 제도의 행정적 운영과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및 주무관으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10명을 포함하였다. 책임교사는 2024년 이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직접 협력하며 학교 현장에서 사안 처리 과정을 경험한 교원으로,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는 제도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의 세부 구성은 [표 3-2]과 같다.

[표 3-2] 각 전문가 집단 구성 현황

전문가 집단	인원	전문 경력	선정 기준	소속 지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명	전직 경찰·교원·청소년 상담사·화해중재 전문가	2024~2025년 총 60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경험 보유자	K지역 교육청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	10명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주무관	2024년 이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간사 업무를 담당한 장학사 및 담당 주무관	K지역 교육청
책임교사	10명	현직 학교폭력 책임교사	2024년 이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사안처리를 경험한 현직 책임교사	K지역 교육청

※ 자료 : 델파이 조사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전문가 패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30명이 K지역 교육청 소속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K지역 교육청이 전담조사관 제도를 비교적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 관련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접근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지역에 편중된 패널 구성은 연구 결과의 전국적 일반화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패널 구성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실무 경험, 교육청 관리자의 제도 운영관점, 학교 책임교사의 현장 관점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연구가 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제도의 주체인 전담조사관을 포함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제도는 2024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 경과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 제도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

3.2.2 전문가 분석 및 측정 문항 선정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측정 문항은 전문가의 의견과 논의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패널 중 3명을 선정하여, 선행연구에서 중복되는 문항은 제거하고 중요도가 낮은 문항도 삭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요인 중 본 연구의 목적인 발전 방안 도출과 관련성이 낮은 요인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제외하였다.

기존 연구가 주로 관리자 관점에서 수행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제도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을 반영하여, 각 집단 간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32개 세부 요인은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쳤다. 내용의 중복 제거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기준으로 전담조사관 배정(1-8), 인력 적정 규모(2-8), 슈퍼비전·동료 지지체계(4-8) 3개 요인을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요인의 문항 표현은 원안을 유지하여 최종 4개 항목, 29개 세부 요인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측정도구의 세부 구성은 [표 3-3]과

같다.

[표 3-3] 측정도구 안

순번	영역	세부 측정 문항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1	공정성 확보
		2	객관성 담보
		3	조사 신뢰도
		4	학교 현장 안정화
		5	의사소통 강화
		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7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2	업무부담 및 범위	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	교사 교육활동 조성
		3	행정업무 이관
		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5	교사 동석 여부
		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3	직무역량 및 전문성	1	전문성 향상
		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4	지속적인 보수 교육
		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8	유형별 전문가 채용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1	법적 신분 보장
		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3	법적 분쟁 보호
		4	근무 형태 개선
		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부여
		6	통일된 매뉴얼
		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 자료 : 델파이 조사지 구성을 위해 연구자가 작성

3.2.2.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 현장이 전담조사관을 사안 조사의 적임자로 수용하고 신뢰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안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객관성 담보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도 도입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정화 정도, 전담조사관과 학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수준,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및 외부 전문가 조사 공간 마련의 필요성 등 7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3.2.2.2 업무부담 및 범위

업무부담 및 범위는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에서 실질적인 역할 분담과 업무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전담조사관의 업무 범위가 주로 객관적 사실확인에 국한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시간이 경과할 수록 당사자의 진술이 변질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경향이 있어, 사안 발생 초기에 전담조사관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책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여부, 행정업무의 전담조사관 이관 가능성, 조사과정에서의 역할 중복 해소, 교사 동석 여부의 적절성,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필요성, 목격 학생 진술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등 7개 요인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였다.

3.2.2.3 직무역량 및 전문성

‘직무역량 및 전문성’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본질적 취지와 직결되는 항목이다. 본 제도는 사안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학교 담당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따라서 전담조사관이 실질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 관점에서 평가되어 온 전문성·역량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사관 스스로 체감하는 역량 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역량 강화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학·청소년 심리·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여부, 학교 현장의 사안 대응력, 사이버 폭력·성폭력 등 유형별 조사역량, 지속적인 보수 교육의 필요성, 상담 및 소통 역량,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체계구축,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유형별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 등 8개 요인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였다.

3.2.2.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은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이다. 사안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향해야 하는 전담조사관이 정작 본인은 지역교육청 소속 위촉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된다. 조사과정에서 권한의 한계를 상시 체감할 수밖에 없으며, 학교폭력 당사자와의 의도치 않은 분쟁 발생 시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외부 위촉직으로서 학교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교육청으로부터 기본적인 사안 자료를 제공받더라도, 피·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제공되는 서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 신분 보장, 보수 체계 및 처우 개선,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 장치, 근무 형태 개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화해·중재 권한 부여, 통일된 매뉴얼 마련, 제도의 유지 및 확대 등 7개 요인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였다.

3.2.3 델파이 기법

3.2.3.1 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연구 적합성

델파이 기법은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분석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구조화된 의사소통 기법이다(Linstone & Turoff, 2002: 3). 본 기법은 전문가 집단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권위나 다수의 의견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고, 델파이 조사가 반복되는 동안 설문과 환류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반응을 확인하고 수렴하고 보완하여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차별화된다(Linstone & Turoff, 2002: 3-4).

본 연구에서 델파이 기법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안은 아직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탐색적 연구 주제로서, 제도를 직접 경험한 현장 전문가들의 심층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수차례 반복 조사함으로써 집단 간의 편향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델파이 기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론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수정 델파이 기법은 1차 조사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방법론적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수정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조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종성, 2006).

3.2.3.2 델파이 조사 절차 및 일정

본 연구의 델파이 기법 조사 기간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예비 문항 구성, 전문가 3인에 의한 안면 타당도 검토, 그리고 3차에 걸친 본 설문의 단계로 수행되었다. 세부적인 추진 일정은 [표 3-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4] 델파이 조사 실시 일정

기간	조사 일정

‘25. 11. 12 ~ 20	- 선행연구 분석 및 발전 방안연구에 대한 자료 보완 - 발전 방안에 대한 확정 작성 완료
11. 21 ~ 12. 06	- 전문가 그룹 지정 설문 문항 확인 - 설문 문항의 타당성, 신뢰성 검토 확인, 전문가 그룹(3명)
12 . 7 ~ 25	- 1차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설문(대상 30명) - 설문조사 회수와 분석
12. 26 ~ ‘26. 1. 15	- 2차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설문(대상 30명) - 설문조사 회수와 분석
1. 16. ~2. 9	- 3차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설문(대상 30명) - 설문조사 회수와 분석
2. 10 ~ 28	- 설문조사 통합분석

※ 자료 : 델파이 조사 진행을 위해 연구자가 작성

3.2.3.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1차 조사지 작성에 앞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도 등 내용타당도를 사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후 1차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1차 설문 조사지는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대면 인터뷰, 전화 인터뷰, e-mail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이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2차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3차 설문 조사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는 4개 항목과 29개의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2주간 진행되었다. 중요도 측정을 위해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5: 매우 중요함, 4: 중요함, 3: 보통, 2: 중요하지 않음, 1: 매우 중요하지 않음).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 설문 문항에 주관적인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란을 포함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약 2주간 진행되었다. 1차 조사에서 타당도가 확인된 문항에 대해 수정 및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 문

항을 재구성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차, 2차, 3차 델파이 조사지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중요도 항목의 Cronbach's α 계수가 1차 0.877, 2차 0.874, 3차 0.869로 나타났다.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타당도가 낮거나 의견 수렴이 어려운 문항들이 삭제·수정되었고, 전문가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수렴되면서 응답 분산이 축소되었다. Cronbach's α 계수가 문항 수와 응답 분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계별 소폭 감소는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문항은 단일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 제도 발전을 위한 요인들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Cronbach's α는 조사도구의 척도 신뢰도가 아니라 전문가 응답 경향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다. 조사지 문항과 문항 수 및 신뢰도 관련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조사 항목별 문항 수 및 신뢰도

조사 항목	문항 수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7	6	6
업무부담 및 범위	7	7	7
직무역량 및 전문성	8	8	8
안정성 및 지위 보장	7	7	5
계	29	28	26
신뢰도 중요도 문항 Cronbach's α	0.877	0.874	0.869

※ 자료 :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

3.2.3.4 델파이 기법 분석

수집된 델파이 조사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 문항에 대한 전문가 합의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

차, 중위수, 최빈값, 제1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등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 비율(CVR), 수렴도, 합의도를 함께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델파이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준편차는 전문가들의 응답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다.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Lawshe(1975)가 제시한 CVR 산출 공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렴도와 의견의 일치 수준을 나타내는 합의도는 사분위 수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 비율은 $CVR = \frac{N_e - N/2}{N/2}$

수렴도 $= \frac{Q3 - Q1}{2}$, 합의도 $= 1 - \frac{Q3 - Q1}{Mdn}$

※ N = 패널의 수, Ne = 문항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
Mdn = 중앙값
Q1 = 제 1사 분위 계수로 전체 사례 수의 누적값 중 25%의 값
Q3 = 제 3사 분위 계수로 전체 사례 수의 누적값 중 75%의 값

본 연구의 타당성 검증 및 합의 도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각 설문 문항의 평균이 4.0점 이상인 경우 해당 문항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표준편차 1.0 이하인 경우 전문가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Lawshe(1975)가 제시한 최소 타당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패널 분석과 집단별 분석에서 CVR 기준값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전체 패널(N=30)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CVR 기준값 0.33 이상을, 각 집단별 패널(1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CVR 기준값 0.62 이상을 내용타당도 확보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패널 기준(N=30)을 최종 요인 확정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되, 집단별 분석(N=10)에서 CVR 기준에 미달한 요인은 집단 간 인식 경향의 차이가 큰 요인으로 별도 분류하여 해석하였다. 전체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특정 집단에서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집단의 응답 경향 차이를 결과 해석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셋째, 전문가 의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도는 0.75 이상, 수렴도는 0.50 이하인 경우를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3.2.3.5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과 직관을 익명성과 반복적 환류 과정을 통해 객관화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론이다(노승용, 2006). 그러나 개방형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영천, 2016).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와 전문가 간 소통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측정도구 초안의 타당화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인, 교육청 담당자 1인, 학교폭력 책임교사 1인으로 구성된 사전 전문가(TF)를 운영하여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문항의 현장 적합성과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문항의 표현 명확화와 중복성 제거에 한정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각 요인의 중요도나 응답 방향에 대한 사전 논의는 배제하였다.

둘째, 1, 2, 3차 델파이 본 조사의 응답 과정은 익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개별 패널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TF검토에 참여한 3인 또한 본 조사에서는 다른 패널과 동일한 익명·독립 조건에서 응답하였으며, 별도의 추가 소통이나 안내 없이 본 조사가 진행되었다.

셋째, 차수 간 환류 과정에서는 전체 패널의 통계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객관적으로 요약하여 전달하였을 뿐, 연구자의 해석이나 특정 응답 방향을 유

도하는 의견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의도가 전문가 패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자료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였으며, 설문 참여 전 익명성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였다.

HANSUNG UNIVERSITY

Ⅳ. 분석 결과

4.1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4.1.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 분석 결과

4.1.1.1 전체 분석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과 관련하여 1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분석 결과, 1-1 요인 '공정성 확보'는 평균(M)=4.80, 표준편차(SD)=0.41, 내용타당도(CVR)=1.00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도=1.00, 수렴도=0.00을 기록하여 전문가 전원이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1-2 요인 '객관성 담보'는 평균(M)=4.77, 표준편차(SD)=0.43, CVR=1.00으로 나타났다. 1-3 요인 '조사 신뢰도'는 평균(M)=4.77, 표준편차(SD)=0.43, CVR=1.00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도=0.95, 수렴도=0.13으로 매우 높은 의견 일치를 보였다. 1-4 요인 '학교 현장의 안정화'는 평균(M)=4.60, 표준편차(SD)=0.62, CVR=0.87이고, 1-5 요인 '의사소통 강화'는 평균(M)=4.43, 표준편차(SD)=0.63, CVR=0.87으로 확인되었다. 1-6 요인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는 평균(M)=4.37, 표준편차(SD)=0.72, CVR=0.73으로 나타났다. 1-7 요인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은 평균(M)=3.50, 표준편차(SD)=1.04, CVR=-0.07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은 표준편차가 크고 내용타당도(CVR)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당 요인의 타당성에 대한 유보적 인식 경향이 관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	긍정	중위수	최빈값						

		(SD)	답변								
1-1	4.80	0.4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4	4.60	0.62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1-5	4.43	0.63	28	4.00	4.00	0.87	4.00	5.00	4.50	0.78	0.50
1-6	4.37	0.72	26	4.00	4.00	0.73	4.00	5.00	4.50	0.78	0.50
1-7	3.50	1.04	14	3.50	3.00	-0.07	3.00	4.00	3.50	0.67	0.50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1-7 :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4.1.1.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전담조사관, 교육청, 책임교사) 모두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조사 신뢰도 요인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가 확인되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확보·조사 신뢰도·학교 현장 안정화 요인에서 CVR=1.00, 합의도=1.00으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나타냈다. 교육청 집단은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조사 신뢰도·의사소통 강화·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요인에서 CVR=1.00을 기록하였으나, 학교 현장 안정화(CVR=0.6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책임교사 집단은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조사 신뢰도·학교 현장 안정화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다만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CVR=0.40)에서는 현실적 부담에 따른 유보적 인식이 확인되었다. 세 집단 모두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전담조사관 집단(CVR=-0.20)과 책임교사 집단(CVR=-0.40)에서 CVR 값이 음수로 나타나 외부 이동 조사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1(표 1-1~1-3)을 참조.

4.1.1.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제시된 요인들에 대한 구조적 수정 건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공간확보 방안에 대해 세 집단 모두 외부 별도 공간보다 학교 내 독립적 지정 공간 활용이 적절하다는 공통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1-7 요인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은 전체 기준 CVR=－0.07로 도출되었고 집단별 분석에서도 CVR=-0.40~0.40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되어 2차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1(표 1-4)을 참조.

4.1.2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분석 결과

4.1.2.1 전체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과 관련하여 1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2-1 요인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은 평균(M)=4.67, 표준편차(SD)=0.48, CVR=1.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교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요인 '교사 교육활동 조성'은 평균(M)=4.73, 표준편차(SD)=0.52, CVR=0.93으로 확인되었으며, 합의도=0.95, 수렴도=0.13을 보였다. 2-3 요인 '행정업무 이관'은 평균(M)=4.20, 표준편차(SD)=0.93, CVR=0.60으로 도출되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편차는 행정업무 이관 주체에 대해 집단 내 의견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2-4 요인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는 평균(M)=4.50, 표준편차(SD)=0.68, CVR=0.80으로 확인되었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기존 조사과정에서의 역할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5 요인 '교사 동석 여부'는 평균(M)=4.23, 표준편차(SD)=0.90, CVR=0.53으로 분석되었다. 합의도=0.72, 수렴도=0.63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여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조사 시 교사 동석의 필요성에 대해 집단별로 상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2-6 요인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은 평균(M)=4.20, 표준편차(SD)=0.85, CVR=0.60으로 확인되었다. 조기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투입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2-7 요인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은 평균(M)=4.43, 표준편차(SD)=0.68, CVR=0.80, 합의도=0.80, 수렴도

=0.50으로 확인되었다. 목격 학생 진술 확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4-2]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67	0.48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2	4.73	0.52	29	5.00	5.00	0.93	4.75	5.00	5.00	0.95	0.13
2-3	4.20	0.93	24	4.00	5.00	0.60	4.00	5.00	4.00	0.75	0.50
2-4	4.50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23	0.90	23	4.50	5.00	0.53	3.75	5.00	4.50	0.72	0.63
2-6	4.20	0.85	24	4.00	5.00	0.60	4.00	5.00	4.00	0.75	0.50
2-7	4.43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 지원 마련

4.1.2.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전담조사관, 교육청, 책임교사) 모두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과 교사 교육활동 조성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보였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두 요인에서 CVR=1.00, 합의도=0.95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행정업무 이관(CVR=0.40)에서는 업무부담 증가와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집단 내 의견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교육청 집단은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과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합의를 보였다. 다만 교사 동석 여부(CVR=0.40)와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CVR=0.40)에서는 합의도·수렴도 기준에 미달하여 집단 내 의견이 분산되었다. 책임교사 집단은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교사 교육활동 조성·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요인에서 CVR=1.00을 기록하였으나, 교사 동석 여부(CVR=0.40)에서 합의도·수렴도 기준에 미달하여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의견 분산을 보였다. 행정

업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집단 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 2차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1(표 1-5~1-7)을 참조.

4.1.2.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가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였으나 세부적인 실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로 확인되었다. 전담조사관이 사안 처리를 전담하고 학교는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실제 운영 방식에서는 인식 경향의 차이로 보여진다. 특히 목격 학생의 진술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행정업무 이관(2-3)과 교사 동석 여부(2-5) 요인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 2차 조사에 포함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1(표 1-8)을 참조.

4.1.3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 분석 결과

4.1.3.1 전체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과 관련하여 1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3-1 요인 '전문성 향상'은 평균(M)=4.90, 표준편차(SD)=0.31, CVR=1.00으로 전문가 전원이 높은 중요도를 인식하였다. 3-2 요인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는 평균(M)=4.73, 표준편차(SD)=0.45, CVR=1.00으로 확인되었다. 3-3 요인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은 평균(M)=4.77, 표준편차(SD)=0.43, CVR=1.00으로 전담조사관이 가져야 할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 요인 '지속적인 보수 교육'은 평균(M)=4.60, 표준편차(SD)=0.50, CVR=1.00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3-5 요인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은 평균(M)=4.13, 표준편차(SD)=0.90, CVR=0.47,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여 전담조사관의 직무 범위에 대

한 인식 경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3-6 요인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는 평균(M)=4.57, 표준편차(SD)=0.63, CVR=0.87로 도출되었다. 3-7 요인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은 평균(M)=4.50, 표준편차(SD)=0.68, CVR=0.80으로 나타났고, 3-8 요인 '유형별 전문가 채용'은 평균(M)=4.10, 표준편차(SD)=1.00, CVR=0.40,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여 3-5 요인과 더불어 항목 내에서 응답 분산이 가장 크게 나타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4-3]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3-1	4.90	0.3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73	0.45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4	4.60	0.50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5	4.13	0.90	22	4.00	5.00	0.47	3.00	5.00	4.00	0.50	1.00
3-6	4.57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3-7	4.50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8	4.10	1.00	21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4.1.3.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전담조사관, 교육청, 책임교사) 모두 전문성 향상·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등 조사역량·지속적인 보수 교육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1.00)과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CVR=1.00)에서도 높은 합의를 보여 역량 전반에 걸쳐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0.40)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CVR=0.20)에서 합의도·수렴도 기준에 미달하여 해당 요인에 대한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0.00)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CVR=0.60) 및 조사 배정·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CVR=0.60)에서도 응답 분산이 관찰되었다.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합의도·수렴도 기준에 미달하거나 낮은 CVR을 보여 집단별 인식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2차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1(표 1-9~1-11)을 참조.

4.1.3.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전문가 집단은 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의 객관적 사안 조사와 전문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다만 조사관 개별 역량 편차에 따른 질적 수준 유지 및 구체적인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집단별 인식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3-5)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3-8) 요인에서 전담조사관 집단과 교육청·책임교사 집단 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해당 항목들을 2차 조사에 포함하여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1(표 1-12)을 참조.

4.1.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분석 결과

4.1.4.1 전체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과 관련하여 1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4-1 요인 '법적 신분 보장'은 평균(M)=4.63, 표준편차(SD)=0.49, CVR=1.00으로 도출되어 현재 위촉직 중심 체제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

분 안정화에 대한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4-2 요인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은 평균(M)=4.53, 표준편차(SD)=0.63, CVR=0.87으로 나타나 전문성에 부합하는 보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높은 중요도 인식이 관찰되었다. 4-3 요인 '법적 분쟁 보호'는 평균(M)=4.83, 표준편차(SD)=0.38, CVR=1.00으로 나타나 본 항목 내에서 가장 높은 평균과 CVR, 가장 낮은 표준편차를 기록하였다. 전담조사관도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송 및 법적 리스크로부터 전담조사관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보호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4 요인 '근무 형태 개선'은 평균(M)=3.90, 표준편차(SD)=0.92, CVR=0.33으로 도출되었다.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여 평균값이 항목 내에서 가장 낮고 의견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다. 교육청 상주나 권역별 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4-5 요인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은 평균(M)=4.20, 표준편차(SD)=1.03, CVR=0.47으로 나타났다. 합의도=0.60, 수렴도=1.00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여 평균(M) 4.20으로 긍정적이나, 표준편차가 1.03으로 유일하게 1.00을 초과하였다. 이는 전담조사관에게 조사 기능 외에 화해·중재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4-6 요인 '통일된 매뉴얼'은 평균(M)=4.63, 표준편차(SD)=0.67, CVR=0.80으로 확인되었다. 4-7 요인 '제도의 유지 및 확대'는 평균(M)=4.73, 표준편차(SD)=0.52, CVR=0.93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 필요성에 대해 높은 중요도 인식이 도출되었다.

[표 4-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4-1	4.63	0.49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53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4-3	4.83	0.38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4	3.90	0.92	20	4.00	4.00	0.33	3.00	5.00	4.00	0.50	1.00

4-5	4.20	1.03	22	5.00	5.00	0.47	3.00	5.00	5.00	0.60	1.00
4-6	4.63	0.67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4-7	4.73	0.52	29	5.00	5.00	0.93	4.75	5.00	5.00	0.95	0.13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근무 형태 개선,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4.1.4.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법적 분쟁 보호(4-3) 요인에서 CVR 1.00으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보수 체계 처우 개선·법적 분쟁 보호(CVR=1.00, 합의도=1.00, 수렴도=0.00)에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기록하였으며, 법적 신분 보장(CVR=1.00)에서도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근무 형태 개선(CVR=0.20, 합의도=0.50, 수렴도=1.00)에서는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분산이 크게 관찰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법적 분쟁 보호·통일된 매뉴얼(CVR=1.00)에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근무 형태 개선(CVR=0.20)과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CVR=0.6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제도의 유지 및 확대(CVR=1.00, 합의도=1.00, 수렴도=0.00)와 법적 분쟁 보호(CVR=1.00)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으나,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CVR=0.20, 합의도=0.60, 수렴도=1.00)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화해·중재 권한 부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향이 관찰되었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1(표 1-13~1-15)을 참조.

4.1.4.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전문가 집단은 법적 분쟁 보호(4-3)·통일된 매뉴얼(4-6)·제도의 유지 및 확대(4-7)가 제도 안착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근무 형태 개선(4-4)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CVR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개별 교육지원청

의 공간 부족 등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해당 요인을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권역별 거점 운영'으로 수정·보완하여 2차 설문에 반영하였다.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4-5) 요인은 책임교사 집단에서 표준편차 1.41로 응답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전담조사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여 2차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1(표 1-16)을 참조.

4.2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요인의 수정·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항목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서는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요인이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내용타당도(CVR)가 낮게 나타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외부 이동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요인을 삭제하여 총 7개 요인에서 6개 요인으로 축소하였다.

항목 2 '업무부담 및 범위'에서는 '행정업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요인들을 제외하지 않고 2차 델파이 조사 항목에 다시 포함하여 재질의함으로써 전문가 간의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항목 3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서는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에 대해 전담조사관과 교육청, 교사 집단 간의 견해차가 확인되었다. 이는 전담조사관의 직무 확립과 전문성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변수이므로, 해당 요인들을 제외하지 않고 2차 델파이 조사 항목에 다시 포함하여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항목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에서는 '근무 형태 개선'과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요인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집단 간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집단별

구조적 인식 경향의 차이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당 요인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주요 요인이므로, 통계적 수치만으로 문항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계적인 문항 제거보다는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재질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4-4번 항목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권역별 거점 운영'으로 수정하였다.

[표 4-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2차 조사지 반영 현황

항목	삭제 · 수정 요인	유지 문항	확정 요인 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1-7) → CVR 기준 미달로 제외(삭제)	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6개
업무부담 및 범위	없음.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7개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없음.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8개
안정성 및 지위 보장	근무 형태 개선 (4-4) → 권역별 거점 운영(수정)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수정)**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7개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합계	1개 삭제 1개 수정		28개

※ 자료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단, 4-4 요인은 1차 조사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근무 형태 개선'에서 '권역별 거점 운영'으로 표현 수정되었음.

4.2.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분석 결과

4.2.1.1 전체 분석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과 관련하여 2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다. 분석 결과, 해당 항목에 포함된 6개 요인 모두 내용타당도, 합의도,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요인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전체 6개 요인의 평균은 4.40~4.80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에서 높은 중요도 인식이 나타났다. 둘째, 모든 요인의 합의도가 0.75~1.00의 범위를 기록하여 기준치 0.75 이상을 충족하였다. 셋째,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이 0.87~1.00으로 기준치 이상을 충족하였다. 결론적으로 '제도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의 모든 요인은 높은 수준의 타당도와 합의도가 확인되었다.

[표 4-6]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1-1	4.80	0.4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4	4.60	0.62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1-5	4.43	0.63	28	4.50	5.00	0.87	4.00	5.00	4.50	0.78	0.50
1-6	4.40	0.56	29	4.50	4.00	0.93	4.00	5.00	4.00	0.75	0.50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4.2.1.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조사 신뢰도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확보·조사 신뢰도·학교 현장 안정화 요인에서 평균(M)=5.00, CVR=1.00, 수렴도=0.00으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요인에서도 CVR=0.80 이상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교육청 집단은 전반적으로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으나, 학교 현장 안정화(CVR=0.60) 요인에서 기준치에 근접하나 미달하는 결과가 나타나 제도 도입만으로는 현장 안정화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유보적 인식 경향이 확인되었다. 책임교사 집단은 공정성 확보·학교 현장 안정화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의사소통 강화(CVR=0.60) 요인에서 기준치에 근소하게 미달하여 전담조사관의 소통 역량에 대한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2(표 2-1~2-3)를 참조.

4.2.1.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담조사관의 개입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조사역량 외에 공감 능력 및 의사소통 전문성 함양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학생·학부모 대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조사 공간의 경우 외부 기관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교내 전용 공간 마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2(표 2-4)를 참조.

4.2.2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분석 결과

4.2.2.1 전체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과 관련하여 2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분석 결과, 7개 요인 모두 내용타당도 비율(CVR) 기준을 충족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된 일부 요인에서는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요인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교사 교육활동 조성이 평균(M)=4.73으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은 평균(M)=4.67로 확인되었다. 두 요인은 합의도=0.80~0.95, 수렴도=0.13~0.50의 수치를 보였다. 둘째, CVR 검증 결과 모든 요인이 최소 기준값(0.33)이상을 충족(0.53~1.00)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행정업무 이관·교사 동석 여부·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등 3개 요인은 평균(M)=4.20~4.23으로 중요도는 인정되었으나, 행정업무 이관(표준편차 SD=0.93)에서 응답 분산이 가장 크게 관찰되었으며, 교사 동석 여부는 합의도=0.72로 기준치에 미달하였다.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요인도 CVR=0.60, 수렴도=0.50으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의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나, 일부 요인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4-7] 업무부담 및 범위 조정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67	0.48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2	4.73	0.52	29	5.00	5.00	0.93	4.75	5.00	5.00	0.95	0.13
2-3	4.20	0.93	24	4.00	5.00	0.60	4.00	5.00	4.00	0.75	0.50
2-4	4.50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23	0.90	23	4.50	5.00	0.53	3.75	5.00	4.50	0.72	0.63

2-6	4.20	0.85	24	4.00	5.00	0.60	4.00	5.00	4.00	0.75	0.50
2-7	4.43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4.2.2.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과 교사 교육활동 조성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교사 교육활동 조성(평균 M=4.90, 합의도=1.00)과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평균 M=4.80, 합의도 0.95)에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행정업무 이관(CVR=0.40, 합의도=0.6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분산이 크게 관찰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교사 교육활동 조성·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요인에서 평균(M)=4.50으로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으나, 교사 동석 여부와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CVR=0.40, 합의도=0.50) 요인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교사 교육활동 조성·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합의를 나타냈으나, 교사 동석 여부(CVR=0.40, 합의도=0.50, 표준편차(SD)=1.05)와 행정업무 이관(CVR=0.60) 요인에서 응답 경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정업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 3차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2(표 2-5~2-7)를 참조.

4.2.2.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담조사관 제도가 책임교사의 업무 경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행정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 및 성향 파악의 한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에 대해서는 학생의 진술 반복 최소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교사의 교육적 중재 역할 축소라는

부정적 측면이 상충하는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목격 학생 진술 확보를 위해 객관성 검증 가이드라인 수립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2(표 2-8)를 참조.

4.2.3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 분석 결과

4.2.3.1 전체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과 관련하여 2차 델파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분석 결과, 대다수 요인이 높은 평균과 타당도를 보였으나, 전문가의 자격요건과 채용 방식에 관한 일부 요인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요인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전문성 향상 요인이 평균(M)=4.90, 표준편차(SD)=0.31, 합의도=1.00, CVR=1.00을 기록하였다. 둘째,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요인은 평균(M)=4.13, 표준편차(SD)=0.90, 합의도=0.50으로 도출되었으며, 집단별 역할 인식 경향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은 평균(M)=4.10, 표준편차(SD)=1.00, CVR=0.40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응답 분산이 크게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서 조사의 전문화와 시스템적 지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표 4-8]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3-1	4.90	0.3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73	0.45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4	4.60	0.50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5	4.13	0.90	22	4.00	5.00	0.47	3.00	5.00	4.00	0.50	1.00
3-6	4.57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3-7	4.50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8	4.10	1.00	21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4.2.3.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전문성 향상·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등 조사역량·지속적인 보수 교육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평균 M=5.00, 표준편차 SD=0.00)에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기록하였으며,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1.00)에서도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여 타 집단과 응답 경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사이버 폭력·성폭력 등 조사역량(평균 M=4.90)에서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0.40, 합의도=0.50)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CVR=0.2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전문성 향상(평균 M=5.00, 표준편차 SD=0.00)에서 전원 만점을 부여하였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0.00, 합의도=0.43)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전담조사관의 상담·소통 역할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향이 관찰되었다.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CVR 기준에 미달하거나 낮은 합의도를 보여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3차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2(표 2-9~2-11)를 참조.

4.2.3.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담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질적 수준이 심의 결과의 요인임을 강조하며 문서 작성

역량 및 조사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유형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무 중심 보수 교육과 사이버·성폭력 등 특화된 영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상담 및 소통 역량과 관련하여 전담조사관의 역할 범위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유형별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년 단위 위촉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전문성 축적의 구조적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2(표 2-12)를 참조.

4.2.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분석 결과

4.2.4.1 전체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과 관련하여 2차 델파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분석 결과, 법적 분쟁 보호 요인에서 높은 중요도 인식이 나타났으나, 권역별 거점 운영과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요인에서는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첫째, 법적 분쟁 보호 요인이 평균(M)=4.83으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고, 제도의 유지 및 확대와 법적 신분 보장 요인이 각각 M=4.73과 M=4.63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권역별 거점 운영 요인은 평균(M)=3.70, CVR=0.07로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였다. 셋째,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요인은 표준편차(SD)=1.17로 가장 큰 응답 분산을 보였으며, 평균(M)=3.77, CVR=0.1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담조사관에게 중재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권한이 충돌하거나 중재 실패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에 대한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권역별 거점 운영과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요인은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5개 요인에 대해서는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표 4-9]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합의	수렴

	평균 (M)	표준 편차 (SD)	긍정 답변	중위수	최빈값				n	도	도
4-1	4.63	0.49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53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4-3	4.83	0.38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4	3.70	0.84	16	4.00	3.00	0.07	3.00	4.00	4.00	0.75	0.50
4-5	3.77	1.17	17	4.00	5.00	0.13	3.00	4.00	4.00	0.50	1.00
4-6	4.63	0.67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4-7	4.73	0.52	29	5.00	5.00	0.93	4.75	5.00	5.00	0.95	0.13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4.2.4.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법적 분쟁 보호·법적 신분 보장·제도의 유지 및 확대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보수 체계 처우 개선(평균 M=4.90)과 법적 분쟁 보호(평균 M=4.90)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으며, 권역별 거점 운영(CVR=0.2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CVR=0.60)에서도 기준치에 근소하게 미달하여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청 집단은 법적 분쟁 보호와 통일된 매뉴얼(평균 M=4.80)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권역별 거점 운영(CVR=0.2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보수 체계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전담조사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책임교사 집단은 제도의 유지 및 확대(평균 M=4.90, 수렴도 0.00)와 법적 분쟁 보호(평균 M=4.80)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으나,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평균 M=2.70, CVR −0.80)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해당 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권역별 거점 운영과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CVR 기준에 미달하여 3차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2(표 2-13~2-15)를 참조.

4.2.4.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일관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운영 방식의 효율화 및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의 실질적 보호책 마련에 동의하였으나, 교권 보호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담조사관에 대한 보호 조치만 강화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타당도 기준에 미달한 권역별 거점 운영과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해당 요인들을 3차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2(표 2-16)를 참조.

4.3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차 델파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요인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2차 델파이 조사분석 결과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항목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타당도는 확보되었으나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개념 명료화가 요구된 '학교 현장 안정화'와 '의사소통 강화' 요인에 대해,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재검증하기로 결정하였다.

항목 2 '업무부담 및 범위'의 경우,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중요도와 내용타당도(CVR)등 정량적 기준은 모두 확보되었다. 그러나 업무부담의 주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와 일부 유보적 의견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계적 타당성이 확인된 7개 요인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유지하되,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집단 간 합의 도출 여부를 재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항목 3 '직무역량 및 전문성'의 경우, 사안 조사의 전문성을 포함한 영역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높은 내용타당도를 유지하였다.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은 2차 조사에서도 교육청 및

교사 집단 모두 내용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 3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항목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서 '권역별 거점 운영'과 '화해·중재 권한' 요인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전체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교사 집단에서 중재 권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2개 요인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차 델파이 조사는 항목 4의 2개 요인을 제외한 26개의 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및 긍정 답변, 내용타당도(CVR),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였다.

[표 4-10]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3차 조사지 반영 현황

항목	삭제 · 수정 요인	유지 문항	확정 요인 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없음.	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6개
업무부담 및 범위	없음.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7개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없음.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8개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안정성 및 지위 보장	- 권역별 거점 운영(4-4) -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4-5) → CVR 기준 미달로 제외(삭제)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5개
합계	2개 삭제		26개

※ 자료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4.3.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분석 결과

4.3.1.1 전체 분석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과 관련하여 3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11]과 같다. 분석 결과, 6개 전체 요인 평균(M)은 4.03~4.80의 분포를 보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VR) 또한 최소 0.40에서 최대 1.00으로 나타나 패널 수 30명 기준의 최소 수용치인 0.33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내 조사 공간 확보(1-6)'요인은 평균(M)=4.03, 표준편차(SD)=1.00, 내용타당도(CVR)=0.40으로 6개 요인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표준편차 1.0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응답 분산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1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1-1	4.80	0.4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4	4.50	0.78	25	5.00	5.00	0.67	4.00	5.00	5.00	0.80	0.50
1-5	4.33	0.71	26	4.00	5.00	0.73	4.00	5.00	4.00	0.75	0.50
1-6	4.03	1.00	21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4.3.1.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조사 신뢰도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확보·조사 신뢰도·학교 현장 안정화 요인에서 평균(M)=5.00, CVR=1.00으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기록하였으며,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CVR=0.60) 요인에서는 기준 임계치에 근접하나 미달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조사 신뢰도 요인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학교 현장 안정화(CVR=0.40)와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평균 M=3.90, CVR 0.4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학교 현장 안정화·의사소통 강화(CVR=0.6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평균 M=3.90, CVR=0.20)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3(표 3-1~3-3)을 참조.

4.3.1.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제도의 가치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높은 합의를 나타내 내용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악성 민원 감소와 조사 공간확보 등 운영적 측면에서는 전담조사관 집단의 높은 기대와 달리 교육청 및 교사 집단의 유

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책임교사 집단에서 공간확보 요인의 타당도가 기준치에 미달한 점은 업무 가중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4.3.2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분석 결과

4.3.2.1 전체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과 관련하여 3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다. 대다수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나, 행정업무 이관(2-3)과 교사 동석 여부(2-5) 요인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행정업무 이관(2-3) 요인은 평균(M)=3.77, 표준편차(SD)=1.17, CVR=0.07로 기준값(0.33)을 크게 미달하였으며,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에도 불구하고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 교사 동석 여부(2-5) 요인 역시 CVR=0.53, 합의도=0.72로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되었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조성에 대해서는 높은 합의를 나타냈으나, 행정업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은 3차 델파이 조사까지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2]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63	0.56	29	5.00	5.00	0.93	4.00	5.00	5.00	0.80	0.50
2-2	4.67	0.66	27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2-3	3.77	1.17	16	4.00	4.00	0.07	3.00	5.00	4.00	0.50	1.00
2-4	4.50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23	0.90	23	4.50	5.00	0.53	3.75	5.00	4.50	0.72	0.63
2-6	4.17	0.83	24	4.00	4.00	0.60	4.00	5.00	4.00	0.75	0.50

2-7	4.30	0.79	24	4.50	5.00	0.60	4.00	5.00	4.50	0.78	0.50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4.3.2.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교사 교육활동 조성·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보여준다. 그러나 각 전문가 집단에서의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행정업무 이관(CVR=0.00, 합의도=0.14, 수렴도=1.50)에서 기준값을 크게 충족하지 못하여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CVR=0.40, 합의도=0.50)에서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교육청 집단은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CVR=1.00)에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행정업무 이관(CVR=0.00)과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CVR=0.00)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교사 동석 여부와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CVR=0.40)에서도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되었다. 책임교사 집단은 행정업무 이관(CVR=0.20, 합의도=0.55, 수렴도=1.13)과 교사 동석 여부(CVR=0.40, 합의도=0.5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되었다. 행정업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3차 조사까지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3(표 3-4~3-6)을 참조.

4.3.2.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행정업무 이관 요인은 3차 조사에서도 CV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 발전 요인에서 제외하였다. 교사 동석 여부·전담조사관 조기 투입·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요인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 역할 범위에 대한 인식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일정 조율·초기 투

입·동석 여부 등 실무에 대한 행정적·법적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3.3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 분석 결과

4.3.3.1 전체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과 관련하여 3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13]과 같다. 대다수 요인에서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3-5)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3-8) 요인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3-5) 요인은 CVR=0.47로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나,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응답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 유형별 전문가 채용(3-8) 요인은 평균(M)=3.93, 표준편차(SD)=1.05, CVR=0.27로 타당성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3차 조사까지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서 조사의 전문성과 시스템적 지원에 대해서는 높은 합의를 도출되었으나, 역할 범위와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4-13]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3-1	4.90	0.3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73	0.45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4	4.60	0.50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5	4.13	0.90	22	4.00	5.00	0.47	3.00	5.00	4.00	0.50	1.00
3-6	4.57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3-7	4.50	0.69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8	3.93	1.05	19	4.00	5.00	0.27	3.00	5.00	4.00	0.50	1.00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4.3.3.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전문성 향상·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등 조사역량·지속적인 보수 교육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평균 M=5.00, 표준편차 SD=0.00)에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기록하였으나,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CVR=0.60, 합의도=0.72)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경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전문성 향상·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등 조사역량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0.40, 합의도= 0.50)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CVR=0.00, 합의도=0.14, 수렴도=1.5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사안 조사 전문성 관련 요인에서 CVR=0.80 이상의 높은 합의를 보여줬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 모두 평균(M)=3.80, CVR=0.00, 합의도=0.43으로 동일하게 산출되어 기준치에 미달하였다.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3(표 3-7~3-9)을 참조.

4.3.3.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사안 조사의 객관적 전문성 확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공감하였으나, 현장의 실무적 방식에 대해서는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청 집단과 책임교사 집단에서는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

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상담 역량 강화나 유형별 전문가 채용 등 역할 및 조직의 확장에 대해서는 전담조사관의 직무가 객관적 사실 확인에 한정되어야 하며 역할 확장은 오히려 조사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달리 전담조사관 집단에서는 업무처리 속도보다 조사의 질적 수준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의 상담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리 주체(교육청 담당자, 책임교사)와 조사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는 전담조사관 간의 역할 기대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는 직무 범위를 명확히 조율할 법제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3.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분석 결과

4.3.4.1 전체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과 관련하여 3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14]와 같다. 분석 결과, 2차 조사에서 타당도 기준에 미달하였던 요인들을 제외한 후, 제도의 근본적인 존립과 직결된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법적 보호 마련에 대해서는 전 요인의 CVR이 0.87~1.00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합의가 확인되었다. 특히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던 항목 2와 항목 3의 결과와 대조적으로, 본 항목에서는 법적 신분 보장·법적 분쟁 보호·제도의 유지 및 확대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타났다.

[표 4-1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4-1	4.70	0.47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57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4-3	4.83	0.38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4	4.70	0.60	28	5.00	5.00	0.87	4.75	5.00	5.00	0.95	0.13
4-5	4.80	0.4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4.3.4.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법적 신분 보장·법적 분쟁 보호·제도의 유지 및 확대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전 요인에서 CVR=1.00, 합의도=1.00, 수렴도=0.00으로 완전한 의견 일치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법적 신분 보장과 보수 체계 처우 개선 요인에서 평균(M)=5.00, 표준편차(SD)=0.00을 기록하여 현재의 불안정한 신분과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한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전 요인에서 CVR=0.80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법적 분쟁 보호와 통일된 매뉴얼(평균 M=4.80)에서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보수 체계 처우 개선(CVR=0.80, 합의도=0.78)에서는 타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합의 수준을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제도의 유지 및 확대(평균 M=4.90, CVR 1.00, 합의도 1.00)와 법적 분쟁 보호(평균 M=4.80, 합의도 0.95)에서 높은 합의를 보여줬으나, 통일된 매뉴얼(CVR=0.60, 수렴도=0.63)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분산이 확인되었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3(표 3-10~3-12)을 참조.

4.3.4.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과 관련하여, 세 집단 모두 제도의 근본적 존립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타났다. 제도가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수 체계 처우 개선 요인에 대해서는 현행 위촉직 신분의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

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정기적 근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통일된 매뉴얼 요인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지침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5]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최종 요인 확정 현황

항목	삭제 · 수정 요인	유지 문항	확정 요인 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없음.	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6개
업무부담 및 범위	없음.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7개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없음.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 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8개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없음.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5개
합계	없음.		26개

※ 자료 :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4.4 델파이 최종 분석 결과

4.4.1 델파이 분석을 통한 최종 측정도구 도출

3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화 방안 연구를 위한 최종 측정도구를 [표 4-16]과 같이 4개 항목 26개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본 모형은 최초 문헌 고찰을 통해 구성된 4개 항목 32개 요인에서 출발하였으며, 3차 델파이 조사의 통계적 검증을 거쳐 타당성 기준에 미달하는 요인들을 기각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제도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전문가 패널 간에 높은 합의도와 수렴도가 나타나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 방식이나 통일된 매뉴얼 등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각 집단(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책임교사)의 입장에 따라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 도출된 4개 항목과 26개 요인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를 포괄하여 전체 전문가 집단의 통계적 타당성 충족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다만 이 중 행정업무 이관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2개 요인은 일부 집단에서 CVR 및 합의도·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해당 요인의 타당성이 부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단별 이해관계와 현장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인식 경향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행정업무 이관은 책임교사 집단의 제도 경험과 업무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집단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난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요인을 단순 탈락 처리하지 않고 집단 간 이견이 지속된 쟁점으로 분류하여 최종 발전 방안 논의에 포함하였다.

[표 4-16] 제도 발전을 위한 요인

항목	순번	요인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1	공정성 확보
	2	객관성 담보

	3	조사 신뢰도
	4	학교 현장 안정화
	5	의사소통 강화
	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2. 업무부담 및 범위	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	교사 교육활동 조성
	3	행정업무 이관*
	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5	교사 동석 여부
	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3. 직무역량 및 전문성	1	전문성 향상
	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4	지속적인 보수 교육
	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8	유형별 전문가 채용*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1	법적 신분 보장
	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3	법적 분쟁 보호
	4	통일된 매뉴얼
	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 * 해당 요인은 3차 조사까지 일부 집단에서 CVR 및 합의도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집단 간 이견이 지속된 쟁점으로 분류하여 최종 발전 방안 논의에 포함하였음.

4.4.2. 델파이 분석 결과의 의견 수렴 과정

본 연구는 델파이 패널 간 의견의 수렴 여부 및 항목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비율(CVR), 합의도, 수렴도를 복합적인 판단 지표로 활용하였다.

우선, 내용타당도는 Lawshe(1975)가 제시한 임계치에 근거하여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전문가 패널(N=30)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CVR 0.33 이상을, 3개의 개별 하위 집단(N=10)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CVR 0.62 이상을 내용타당도 확보의 최소 요구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아울러 패널 간 인식의 일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합의도와 수렴도를 산출하였다. 통상적 델파이 연구의 기준에 따라 합의도는 0.75 이상(1.0에 근접할수록 강한 합의를 의미), 수렴도는 0.50 이하(0에 수렴할수록 패널 간 인식 편차의 감소를 의미)일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4.4.2.1 전체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

전체 전문가 집단(N=30)을 대상으로 1차에서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반복 수행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전반적으로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대부분의 항목에서 CVR과 합의도가 높아지고 수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항목별로 수렴 수준과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은 2차 조사에서 CVR 0.87~1.00으로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CVR 0.40~1.00으로 분산이 다시 나타났다.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은 1차와 2차 조사에서 CVR 0.53~1.00, 합의도 0.72~0.95, 수렴도 0.13~0.63으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3차 조사에서는 CVR 0.07~0.93, 합의도 0.50~0.95, 수렴도 0.13~1.00으로 나타났다.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도 1차와 2차 조사에서 CVR 0.40~1.00, 합의도 0.50~1.00, 수렴도 0.00~1.00으로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였으며, 3차 조사에서는 CVR 0.27~1.00, 합의도 0.50~1.00, 수렴도 0.13~1.00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은 1·2차 조사에서 응답 분산이 크게 나타났으나, 2차 조사에서 타당도 기준에 미달한 요인들을 제외한 이후 3차 조사에서

CVR 0.87~1.00, 합의도 0.80~1.00, 수렴도 0.00~0.50으로 네 항목 중 가장 높은 수렴 수준을 나타냈다. 항목별 수렴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각 차시마다 요인의 수정·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 17]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전체)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0.07 ~1.00	0.67 ~1.00	0.00~ 0.50	0.87 ~1.00	0.75 ~1.00	0.00 ~0.50	0.40 ~1.00	0.50 ~1.00	0.13 ~1.00
업무부담 및 범위	0.53 ~1.00	0.72 ~0.95	0.13 ~0.63	0.53 ~1.00	0.72 ~0.95	0.13 ~0.63	0.07 ~0.93	0.50 ~0.95	0.13 ~1.00
직무역량 및 전문성	0.40 ~1.00	0.50 ~1.00	0.00 ~1.00	0.40 ~1.00	0.50 ~1.00	0.00 ~1.00	0.27 ~1.00	0.50 ~1.00	0.13 ~1.00
안정성 및 지위 보장	0.33 ~1.00	0.50 ~1.00	0.13 ~1.00	0.07 ~1.00	0.50 ~1.00	0.13 ~1.00	0.87 ~1.00	0.80 ~1.00	0.00 ~0.50

4.4.2.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의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전문가 집단(N=10)을 대상으로 1차에서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반복 수행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은 1·2차 조사에서 CVR 0.20~1.00으로 응답 분산이 크게 나타났으나 3차 조사에서 CVR 1.00, 합의도 1.00, 수렴도 0.00으로 가장 뚜렷한 수렴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은 1·2차에서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다가 3차 조사에서 수렴도가 최대 1.50으로 나타나 네 항목 중 응답 분산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담조사관 집단 내에서도 업무 범위에 대한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 4-18]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0.20 ~1.00	0.50 ~1.00	0.00 ~0.75	0.80 ~1.00	0.80 ~1.00	0.00 ~0.50	0.60 ~1.00	0.75 ~1.00	0.00 ~0.63
업무부담 및 범위	0.40 ~1.00	0.60 ~1.00	0.00 ~1.00	0.40 ~1.00	0.60 ~1.00	0.00 ~1.00	0.00 ~1.00	0.14 ~1.00	0.00 ~1.50
직무역량 및 전문성	0.80 ~1.00	0.80 ~1.00	0.00 ~0.50	0.80 ~1.00	0.80 ~1.00	0.00 ~0.50	0.60 ~1.00	0.72 ~1.00	0.00 ~0.63
안정성 및 지위 보장	0.20 ~1.00	0.50 ~1.00	0.00 ~1.00	0.20 ~1.00	0.50 ~1.00	0.00 ~1.00	1.00	1.00	0.00

4.4.2.3 교육청 담당자 집단의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

교육청 담당자 전문가 집단(N=10)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1차에서 3차에 걸쳐 반복 수행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직무역량 및 전문성의 경우, 3차 조사 결과 수렴도가 최대 1.50으로 나타나 집단 내 응답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역시 3차 조사에서 합의도가 0.43~0.78로 기준에 미달하여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되었다.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은 3차 조사에서 CVR 0.80~1.00, 합의도 0.78~0.95로 수렴 수준이 높아졌다.

[표 4-19]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0.40 ~1.00	0.44 ~1.00	0.13 ~1.13	0.60 ~1.00	0.69 ~0.95	0.13 ~0.63	0.40 ~1.00	0.50 ~0.95	0.13 ~1.00
업무부담 및 범위	0.40 ~1.00	0.50 ~0.94	0.13 ~1.00	0.40 ~1.00	0.50 ~0.95	0.13 ~1.00	0.00 ~1.00	0.43 ~0.78	0.50 ~1.00

직무역량 및 전문성	0.20 ~1.00	0.44 ~1.00	0.13 ~1.13	0.20 ~1.00	0.44 ~1.00	0.13 ~1.13	0.00 ~1.00	0.14 ~1.00	0.00 ~1.50
안정성 및 지위 보장	0.20 ~1.00	0.69 ~0.95	0.13 ~0.63	0.20 ~1.00	0.69 ~0.95	0.13 ~0.63	0.80 ~1.00	0.78 ~0.95	0.13 ~0.50

4.4.2.4 학교 책임교사 집단의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

학교 책임교사 집단(N=10)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1차에서 3차에 걸쳐 반복 수행한 결과는 [표 4-20]과 같다.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은 2차 조사에서 CVR -0.60~1.00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3차 조사에서 CVR 0.60~1.00, 합의도 0.75~1.00으로 수렴 수준이 높아졌다.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은 1·2·3차 조사 모두 CVR 0.00~1.00, 합의도 0.43~1.00, 수렴도 0.00~1.00으로 세 차례 조사 내내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였다.

[표 4-20]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0.40 ~1.00	0.44~ 1.00	0.13 ~1.00	0.60 ~1.00	0.69 ~0.95	0.13 ~0.63	0.40 ~1.00	0.50 ~0.95	0.13 ~1.00
업무부담 및 범위	0.40 ~1.00	0.50~ 0.94	0.13 ~1.00	0.40 ~1.00	0.50 ~0.95	0.13 ~1.00	0.20 ~1.00	0.50 ~0.95	0.13 ~1.13
직무역량 및 전문성	0.20 ~1.00	0.43 ~1.00	0.00 ~1.00	0.00 ~1.00	0.43 ~1.00	0.00 ~1.00	0.00 ~1.00	0.43 ~1.00	0.00 ~1.00
안정성 및 지위 보장	0.20 ~1.00	0.60 ~1.00	0.13 ~1.00	-0.60 ~1.00	0.67 ~1.00	0.00 ~0.63	0.60 ~1.00	0.75 ~1.00	0.00 ~0.63

4.4.3 델파이 결과를 통한 중요도 분석

3차 델파이 기법의 최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집단 전체 및 집단별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과 낮게 나타난 요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4.3.1 전반적인 항목의 중요도

전반적인 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는 [표 4-21]과 같다. 전체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 평균은 4.51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가 4.57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은 4.54, 직무역량 및 전문성은 4.53 그리고 업무부담 및 범위는 4.39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전담조사관 전문가 집단은 전체적 중요도는 4.68로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가 4.78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어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취지인 사안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청 담당자 집단은 전체적 중요도는 4.42로 나타났고,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이 4.52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책임교사 전문가 집단은 전체적 중요도는 4.42로 나타났고 업무부담 및 범위가 4.48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여 책임교사 집단이 업무부담 경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1] 전반적인 항목의 중요도

순위	전체		전담조사관		교육청		책임교사	
	항목	평균	항목	평균	항목	평균	항목	평균
1	공정성 및	4.57	공정성 및	4.78	안정성 및	4.52	업무부담 및	4.48

	현장 수용도		현장 수용도		지위 보장		범위	
2	안정성 및 지위 보장	4.54	직무역량 및 전문성	4.75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4.48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4.44
3	직무역량 및 전문성	4.53	안정성 및 지위 보장	4.71	직무역량 및 전문성	4.47	안정성 및 지위 보장	4.39
4	업무부담 및 범위	4.39	업무부담 및 범위	4.47	업무부담 및 범위	4.22	직무역량 및 전문성	4.38
전체		4.51	전체	4.68	전체	4.42	전체	4.42

4.4.3.2 항목별 중요도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 중 중요도의 최상위와 최하위 요인은 [표 4-22]와 같다. 전체 집단에서 공정성 확보가 4.80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확보·조사 신뢰도·학교 현장 안정화 3개 요인에서 5.00으로 나타나 전담조사관 집단이 사안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청 집단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조사 신뢰도(4.80)이며, 책임교사 집단은 공정성 확보와 객관성 담보가 4.70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최하위 중요도 요인으로는 세 집단 모두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조사 공간확보보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신뢰도 제고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선순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22]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의 중요도

구분	최상위 중요도		최하위 중요도	
	요인	중요도	요인	중요도

전체	- 공정성 확보	4.80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4.03
전담조사관	- 공정성 확보 - 조사 신뢰도 - 학교 현장 안정화	5.00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4.30
교육청	- 조사 신뢰도	4.80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3.90
책임교사	- 공정성 확보 - 객관성 담보	4.70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3.90

2)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중 중요도의 최상위와 최하위 요인은 [표 4-23]과 같다. 전체 집단에서 교사 교육활동 조성이 4.67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전담조사관 집단(4.90)과 책임교사 집단(4.70)에서도 동일하게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였다. 교육청 집단은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4.50)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행정업무 이관은 전체 중요도 3.77로 4점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세 집단 모두에서 최하위 중요도를 나타내 타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다만 책임교사 집단은 교사 동석 여부(4.00)도 행정업무 이관과 동일한 최하위 중요도를 기록하였다.

[표 4-23]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의 중요도

구분	최상위 중요도		최하위 중요도	
	요인	중요도	요인	중요도
전체	- 교사 교육활동 조성	4.67	- 행정업무 이관	3.77
전담조사관	- 교사 교육활동 조성	4.90	- 행정업무 이관	3.60
교육청	-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4.50	- 행정업무 이관	3.70
책임교사	-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 교사 교육활동 조성 -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4.70	- 행정업무 이관 - 교사 동석 여부	4.00

3)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 중 중요도의 최상위와 최하위 요인은 [표 4-24]와 같다. 전체 집단에서 전문성 향상이 4.90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5.00), 교육청 집단은 사이버 폭력·성폭력 등 조사역량(4.90), 책임교사 집단은 전문성 향상(5.00)을 각각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최하위 중요도 요인으로는 전체 집단과 교육청·책임교사 집단 모두 유형별 전문가 채용을 기록하여 세 집단 모두 유형별 전문가 채용을 최하위 중요도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전담조사관 집단은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4.30)을 최하위로 평가하여 전담조사관 집단이 유형별 채용보다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4]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의 중요도

구분	최상위 중요도		최하위 중요도	
	요인	중요도	요인	중요도
전체	- 전문성 향상	4.90	- 유형별 전문가 채용	3.93
전담조사관	-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5.00	-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4.30
교육청	-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4.90	- 유형별 전문가 채용	3.50
책임교사	- 전문성 향상	5.00	-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 유형별 전문가 채용	3.80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중 중요도의 최상위와 최하위 요인은 [표 4-25]와 같다. 전체 집단에서 법적 신분 보장이 4.83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

를 나타냈으며,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이 4.57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법적 신분 보장과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공동 최상위인 5.00으로 평가한 반면, 교육청 집단(4.40)과 책임교사 집단(4.30)은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최하위 요인으로 평가하여 전담조사관 집단과 교육청·책임교사 집단 간 보수 체계 처우 개선 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제도의 유지 및 확대 요인은 전담조사관 집단과 책임교사 집단 모두 4.90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책임교사 집단에서는 최상위 요인으로 도출되어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중요도 인식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 25]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의 중요도

구분	최상위 중요도		최하위 중요도	
	요인	중요도	요인	중요도
전체	- 법적 신분 보장	4.83	-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57
전담조사관	- 법적 신분 보장 - 보수 체계 처우 개선	5.00	- 법적 분쟁 보호 - 통일된 매뉴얼 - 제도의 유지 및 확대	4.90
교육청	- 법적 분쟁 보호 - 통일된 매뉴얼	4.80	-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40
책임교사	- 제도의 유지 및 확대	4.90	-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0

Ⅴ. 결론

이 연구는 2024년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차에 걸친 반복 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 발전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타당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5.1.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3차에 걸친 조사를 수행한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요인을 4개 항목 26개 요인으로 도출하고 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 지표를 중요도 측면에서만 도출한 것은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 초기 단계에 있다는 상황적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은 제도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된 이후에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항목별 중요도 순위는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직무역량 및 전문성, 업무부담 및 범위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가 최우선 항목으로 도출된 것은 기존 교사 주도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구조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해관계자 전체에 공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이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것은 현행 1년 단위 위촉직 구조가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근본적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과 관련하여 조사 전문성 확보라는 방향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체에서 높은 중요

도 인식이 나타났으나, 전담조사관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집단별 인식 경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도 운영의 실행 방식을 둘러싸고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집단별 분석 결과,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를 최우선 항목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의 본질적 가치인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교육청 집단은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을 최우선 항목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구조적 지속 가능성과 법적 기반 마련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책임교사 집단은 업무부담 및 범위를 최우선 항목으로 평가하여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하여 교사의 교육 본연 역할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세 집단은 항목별 우선순위에서 각자의 역할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응답 경향의 차이를 나타냈다.

요인별 분석 결과, 전문성 향상이 전체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으며, 법적 분쟁 보호, 제도의 유지 및 확대, 공정성 확보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도의 유지 및 확대 요인이 전문가 집단 전체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낸 것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제도의 지속적 운영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행정업무 이관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2개 요인은 3차 조사까지 전문가 패널 간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집단간 이견이 지속된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타당성의 부재라기보다 집단별 이해관계와 현장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요인 수준에서의 집단별 중요도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에서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확보, 조사 신뢰도, 학교 현장 안정화 3개 요인에서 최상위 중요도를 나타냈다. 교육청 집단은 조사 신뢰도를, 책임교사 집단은 공정성 확보와 객관성 담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평가하였다.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에서는 전담조사관 집단이 교사 교육활동 조성을, 교육청 집단이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를 최우선 요

인으로 평가하였으며, 책임교사 집단은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교사 교육활동 조성,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3개 요인을 공동 최우선으로 평가하여 교사의 업무 경감 효과에 대한 높은 중요도 인식을 나타냈다.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서는 전담조사관 집단이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를, 교육청 집단은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을, 책임교사 집단은 전문성 향상을 가장 높게 평가하여 전담조사관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의 방향에서 집단별 인식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에서는 전담조사관 집단이 법적 신분 보장과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공동 최상위로 평가하였으나 교육청, 책임교사 집단은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최하위로 평가하여 처우 개선에 대한 당사자 집단과 관리, 수혜 집단 간 인식 경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집단별 인식 경향의 차이는 각 집단이 처한 역할과 현장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 발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도입 초기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 객관성 향상과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체에서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협력체계 구축,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정 정비, 체계적인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도입,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후속 정책 설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5.1.2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의 4개 항목을 이론적 분석틀로 설정하고 델파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정책수용성 및 절차적 공정성 이론, 업무부담 및 역할 범위 이론, 역량 이론,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 이론을 각각의 이론적 근거로 삼아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조사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틀이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장 문

제를 설명하는 데 유효함을 보여준다.

첫째,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은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AM)과 Tyler(1990)의 절차적 공정성 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공정성 확보, 객관성 담보, 조사 신뢰도, 학교 현장 안정화, 의사소통 강화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해당 항목이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것은 충분한 현장 협의 없이 하향식으로 도입된 전담조사관 제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장 수용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행정적 절차 정비를 넘어 현장 구성원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은 이지혜·이인회(2010)의 업무부담 이론과 최종윤 외(2012)의 역할 범위 논의를 분석틀로 하여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교사 교육활동 조성, 행정업무 이관, 역할 중복 해소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교사 교육활동 조성이 전체 최우선 요인으로 도출되고 행정업무 이관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행정업무의 물리적 이관보다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도 도입의 목적임을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업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에서 3차 조사까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것은 역할 경계의 불명확성이 지속될 경우 역할 혼선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은 McClelland(1973)의 역량 이론과 정제영 외(2014)의 직무역량 연구를 분석틀로 하여 전문성 향상, 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등 조사역량, 지속적 보수 교육, 체계적 지침과 연수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성 향상이 전체 요인 중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고 유형별 전문가 채용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다양한 배경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사관의 전 경력이 학교 현장에서의 전문성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는 역량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외부 전문인력 충원보다 기존 인력의 체계적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지속적 연수 체계 구축이 더 효과적인 발전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은 Rizzo, House & Lirtzman(1970)의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 이론과 Lipsky(1980)의 일선관료제 논의를 분석틀로 하여 법적 신분 보장, 법적 분쟁 보호, 통일된 매뉴얼, 제도의 유지 및 확대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해당 항목이 3차 조사에서 네 항목 중 가장 높은 수렴을 나타낸 것은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불안정과 통일된 업무 지침의 부재가 역할모호성을 심화시킨다는 인식이 전문가 집단 전체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담조사관 집단이 법적 신분 보장과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최상위 과제로 평가한 것과 상이하게 교육청과 책임교사 집단이 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는 역할모호성이 개인 수준을 넘어 제도 수준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적 지위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한 통일된 업무 지침 마련이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5.1.3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제언은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직접적 근거로 하는 제언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정책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후자는 법적 가능성과 예산 소요 그리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첫째,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측면에서 사안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공정성 확보, 객관성 담보, 조사 신뢰도 요인과 관련하여 전 집단에서 전문가 패널 간 내용타당성이 확보된 것은 제도 도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담조사관, 교육청, 학교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전담조사관의 학교 방문 일정 조율, 면담 공간확보, 학생 진술

확보지원 등의 행정적 역할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협력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부담 및 범위 측면에서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교사 교육활동 조성이 전체 최우선 요인으로 도출되고 행정업무 이관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전담조사관 제도의 본질이 단순한 행정업무의 물리적 이관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전담조사관과 책임교사 간의 역할 경계를 법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업무 이관 범위와 교사 동석 여부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역량 및 전문성 측면에서 체계적인 교육 연수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전문성 향상이 전체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으며, 전담조사관 집단은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를 최우선 과제로 평가하였다.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전담조사관 채용 이후의 초기 교육 과정을 의무화하고,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특화 역량을 포함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 운영 지침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하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기준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측면에서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법적 신분 보장과 법적 분쟁 보호 요인이 전 집단에서 전문가 패널 간 내용타당성이 확보된 것은 현장 전문가 모두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은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 범위, 진술 확보 방법,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므로,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 법적 신분, 분쟁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법적 보호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또는 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제언은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법적 가능성, 예산 소요, 조직 운영상 타당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위촉직 신분 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1년 단위의 위촉직 구조는 우수 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위촉 기간의 연장과 재위촉 기준의 역량 중심 전환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직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의 신분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량 기반 자격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정 교육 이수와 현장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격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증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인증 기준 설정·운영 주체·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별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표준 운영 지침의 법제화를 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전국 공통의 최소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법제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안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은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K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책임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운영 방식과 현장 경험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 수준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로 균형 있게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편차를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해관계자 범위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책임교사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교폭력 사안의 직접 당사자

인 피해·가해 학생 및 학부모, 학교장, 학교전담경찰관, 학교 상담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인식은 제도 발전 방향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중요도 인식 연구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집단이 각 요인의 중요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측정한 것으로, 제도의 실제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직접 검증한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탐색적 근거로 활용되어야 하며, 각 요인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 도입 초기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지 비교적 짧은 기간의 시점에서 수행되어, 장기적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제도의 성과 판단과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24년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요인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탐색한 초기 연구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교사의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강민수.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 현장 교원 간의 역할 갈등 분석 연구. 『한국교육 행정학보』, 38(4), 115-139.

강물. (2024). 사법의 시각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오늘의 교육』, 80, 174-188.

교육부. (2023a).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2023b).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교육부. (2023c).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전, 대입 정시에도 반영”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2023d).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 경찰관 105명 증원학교 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3831

교육부. (2023e).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 정협의회”

교육부. (2024a).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059

교육부. (2024b). 2024년 학교폭력 제로 센터 성과 공유회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214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교육부. (2024c).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458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 예방연구소. (2025a).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2025b).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b).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19호].

권용섭. (2024).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델파이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 대학원, 교육학 기독교 교육.

권태일. (2008).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AHP)적용, 박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 관광경영학과

권혜영. (2022). 슈퍼비전에서의 가족 상담사 핵심역량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가족복지학과 가족 교육 및 상담 전공.

권혜정, 이선영. (2022).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처리 절차의 문제점 고찰 및 대안적 접근. 『법과 인권교육 연구』, 15(2), 139-158.

기희경. (2023).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경험에 따른 책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조절 초점. 『융합과 통섭』, 6(1), 110-121.

김난주. (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김남이. (2015). Q 방법론을 활용한 학교폭력의 '무관용 원칙'에 대한 인식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동엽. (2024). 초등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경험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인 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김미정, 곽수란. (2024). 사이버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대응에 관한 고찰, 『법이론 실무 연구』, 12(3), 407-426.

김민준.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다학제적 구성에 대한 고찰:통합적

접근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행정학회지』, 42(3), 87-109.
김병성. (1996). 한국 교육격차에 대한 교육 사회학적 조명. 한국교육 사회학회.
김봉수, 추봉조. (201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제도의 개선방안 -대구, 경부지역 학교폭력 예방업무 경찰의 델파이 면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공안 행정학보』, 69, 9-30.
김상곤, 배진형, 한정숙, 김희영. (2013).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 『학교사회복지』,25, 333-364.
김석건, 강동욱.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법학 논총』, 63, 1-35.
김성수, 이수정. (202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의 국제 비교 연구 : 미국과 한국의 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 연구』, 40(2), 115-138.
김여진. (2025). 학교폭력 대처역량과 역할 갈등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김영수. (2023). 정책평가 척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및 델파이 기법에 근거한 ODA 정책의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영천. (2016). 교육용 개발 시뮬레이션 게임의 성공요인과 개발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김윤주. (2023).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은정.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 36(2), 1-28.
김은주. (2017). 교사 소진의 원인과 대안 모색, 『교육의 이론과 실천』, 22(1),1-38.
김주한. (202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상학적 연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공안 행정학회보』, 30(2), 27-58.

김주한.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현장 근무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 공안 행정학회보』, 33(1), 59-90.

김지혜, 신효정 (2018).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 및 상담 개입 방안에 대한 고찰: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교육학 연구』, 24(4), 137-168.

김진이. (201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관련 법의 사회 복지적 성격고찰. 박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한, 박선환, 박숙희, 우지향. (2018).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이해. 공동체.

김태훈.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좋은교사』,288, 24-27.

김학배. (20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 개입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학.

김현일. (2007).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스포츠관광 산업 발전 방안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형희. (2022). 청소년의 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은경. (2023). 한국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시사점 도출: 국제 사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21(3), 59-85.

노승용. (2006). 델파이 기법 : 전문적 통찰로 미래 예측하기, 『국토』299, 53-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12. 7).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량 강화 방안.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7555137

류광해. (2025).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정 강화 방안, 인하대학교 『법률연구』, 28(2), 171-206.

류영철. (2025).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발전』,44(3), 729-748.

박상철.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이후의 과제 : 피해 학생의 회복 탄력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 상담학회지』, 33(1), 145-168.
박서현. (2020).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 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무학과.
박성현, 천성문. (2021).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 연구』, 22(5), 163-184.
박윤기. (2008).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영경.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경험 연구 : 합의적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정욱.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부대 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정욱, 조홍순.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학습자 중심교육과 교육 연구』, 19(10), 79-99.
박종효, 박효정, 정미경. (2007).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스트레스 연구. 『한국교육』, 34(2), 3-25.
박지현.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자격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법학 연구』, 36(1), 123-145.
박현정. (2021). 영국 학교의 괴롭힘 방지 정책(Anti-Bullying Policy)분석 연구. 『교육정책 연구』, 35(1), 87-109.
박현정, 김성기. (2021).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가 경험하는 절차 공정성에 대한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39(3), 111-140.
박효근. (2020). 학교폭력예방법 변천과정 분석, 『교육법학 연구』, 3(2), 27-64.
백인선. (2012). 실시간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한국어 교사 현직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변국희. (2025). 학교폭력 정책변동 분석연구 -사안 처리를 중심으로-, 박

사학 학위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서정기. (2011).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 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서진경, 황연우. (2020). A시 초·중등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교권 침해 경험에 관한 연구 : 사안처리과정, 교사 역할, 일상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종합 연구』, 18(4), 121-149.

성병창, 이상철. (20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향후과제 분석, 『교육법학 연구』, 31(3), 27-48.

성윤숙.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 청소년연구원.

손장윤. (2022).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자율운항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송명도. (2024). 컨설팅 수행을 위한 컨설턴트의 핵심역량 도출 -델파이 및 AHP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 융합 컨설팅 전공.

신상운.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제언, 『좋은교사』,288, 33-36.

신소정, 이재모. (2015).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대응 방향. 『한국소년 정책학회』, 24(0), 291-329.

신재현, 김나라, 김현진, 최유경. (2023). 2023년 1차 학교폭력 분석 보고서. 한국 교원개발원.

안성규.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 현장의 반응:그 방향성에 관하여,『윤리교육연구』, 73(0), 199-223.

안태용. (2024).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사, 학부모 간 기대 차이. 『학습자중심 교과교육 연구』, 23(22), 785-803.

안혜경, 이시훈. (2022). 역할모호성과 역할과다가 조직 갈등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21(2), 203-239.

양변윤, 김윤나. (2025).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업무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 복지학회지』, 27(2), 61-86.

양야기. (200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 태도,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엄완용. (2013).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오대규. (2001).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신종 및 재출현 전염성 질환 관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오지원. (2019).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압도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왕영뢰. (2021).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우양호, 김인. (2006).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척도의 적합성 비교에 관한 연구, 민원 행정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연구』, 10(1), 153-179.

우진. (2016). 델파이와 AHP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방송통신정책 전공.

윤병훈, 신병욱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 테러학회보』, 17(4), 117-131.

윤정아. (2018). 청소년 발달자산이 학교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주연. (2018).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사이드북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윤혜원, 박균열, 정주영, 주영효. (2025). FGI를 활용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의 저해 요인과 개선방안 분석. 『한국 교육학 연구』,

31(3), 167-200.
윤태현. (201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검토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철. (2025). 관광도로 인증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이론적 탐색과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이병환, 김경선. (2020).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 사.
이상훈. (2014). 학교보안관제 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민간 경비학회보』,13(1), 162-184.
이성웅. (1987). 델파이 기술 예측 방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이순덕. (2023). 학교폭력예방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법학 연구』, 23(4), 193-210.
이승현, 정제영, 강태훈, 김무영. (2014) 학교폭력 가해 학생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연구총서14-AA-02).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연구총서15-AA-07).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환, 유재원. (202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도입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대한 교육법학회』, 35(1), 133-157.
이연미. (2022). 교사의 학교폭력 갈등 중재 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상담심리.
이유진, 이창훈, 강지명, 이상희. (2014).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모델 도입방안 연구(연구보고-14-R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윤성. (2023). 델파이(Delphi) 분석을 통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과.
이인숙. (2015).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위한 강점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이정우.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장 영향과 새로운 활로.

『좋은 교사』, 288, 28-32.
이종성. (2006).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이종원. (2010). 학교폭력의 실태와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 연구』, 17(5), 1-22.
이지영, 김형빈.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상담자-조사관 역할 갈등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32(9), 313-343.
이지혜, 이인회. (2010). 교사의 업무부담, 직무만족, 조직몰입, 교사 전문성과 학교 교육 성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 교원 교육 연구』, 27(1), 25-52.
이진아. (2019). 한일 학교폭력 실태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역사 및 사회문화전공.
이창원, 최창현, 최천근 (2012). 새 조직론 (전정3판). 대영문화사.
이철범. (2016). 델파이(Delphi)와 IPA 분석을 통한 군 위기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운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이춘식. (2014). 검인정 교과서의 선정 제도 개선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교과 교육학 연구』, 18(3), 561-578.
이충민, 김대권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고찰. 『한국 경찰 연구』, 23(4), 187-208.
이태린. (2024).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범죄심리학회연구』, 20(2), 89-104.
이하나, 박성철. (2025).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의 트라우마 기반 접근에 관한 연구: 전담조사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 연구』, 33(1),45-67.
이현아, 이기학. (2009).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요인과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83-102.
이희정. (2022). 명상 심리 상담자의 핵심역량모형 : 포커스 인터뷰 및 델파이 조사 중심. 박사학위논문, 동방 문화 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명상상담전공.

임영대. (2022). 델파이 연구에 의한 기업가정신 기반 발명교육 수업 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기술교육학과 기술교육 전공.

임혜진. (2021).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연구 :다전문가팀의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교육 사회연구』, 31(3), 145-168.

장미. (2011). 청소년지도자 직무역량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28, 114-144.

장정범. (2015). 델파이와 IPA 분석을 통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과.

정시영. (2018). 학교폭력 예방정책 문제정의의 변화와 정책 수단의 선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정재준. (2012).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한국·일본의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53(2), 79-108.

정정길, 이시원, 최종원, 정준금, 권혁주, 김성수, 문명재, 정광호. (2024). 정책학원론(전면개정 4판). 대명출판사.

정제영, 김갑성, 강태훈, 류성창, 윤홍주, 선미숙. (2014). 중등 신임교사의 직무역량 요구도 분석. 『한국 교원 교육 연구』, 31(4), 373-396.

정진철, 이현민, 이영광, 양인준, 이승엽. (2021).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학부모 진로 교육 내용 체계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3(3), 29-50.

정향기. (2018). 학교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무학과.

정현진. (2025).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사안 처리 경험 및 역할 연구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좋은교사운동. (2024). 현장교사가 제안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

주석범. (2007). 델파이 분석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 미래전망.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3). 집단괴롭힘(이지메)방지대책 추진법 시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ypec.re.kr/board/view?linkId=778&menuId=MENU00319

최윤미. (2002). 비즈니스 영어 평가내용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최종윤, 이주락, 황세웅. (2012).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 범위 설정. 『한국 경찰 연구』, 11(1), 225-244.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사이버 폭력의 특징. 서울: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 사이버 폭력 실태 및 대응 방안연구.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성준.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좋은 교사』,288, 37-43.

한유경, 궁선혜, 박주형, 엄수정. (2021). 소수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교육학 연구』, 52(1), 25-58.

현정원, 한유경.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운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에 대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인식분석. 『청소년학연구』,32(5), 377-403.

홍두표. (2023). 델파이와 AHP 기법을 활용한 병원 광고 항목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2. 국외문헌

Bakker, A. B., & Demerouti, E. (2007).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State of the ar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2(3), 309-328.

Bloom, B. S.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Longmans, Green.

Dalkey, N. C. (1969). *The Delphi method: An experimental study of group opinion*. Rand Corporation memorandum RM-5888-PR, 1969.

Davis, F.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319-340.

Demerouti, E., Bakker, A. B., Nachreiner, F., & Schaufeli, W. B. (2001).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of burnou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3), 499-512.

Department for Education. (2017). *Preventing and tackling bullying: Advice for headteachers, staff and governing bodies*. GOV.UK.

Irwin, V., Wang, K., Cui, J., & Thompson, A. (2022). *Report on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21.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U.S. Department of Education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S. Department of Justice.

Kahn, R. L., Wolfe, D. M., Quinn, R. P., Snoek, J. D., & Rosenthal, R.A. (1964). *Organizational Stress: Studies in Role Conflict and Ambiguity*. John Wiley.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Linstone, H. A., & Turoff, M. (2002).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Reading, Mass.: Addison-Wesley.

Lipsky,M. (1980). *Street-level bureaucracy: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Russell Sage Foundation.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Miles, R. H., & Perreault, W. D. (1976). Organizational role conflict: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7(1), 19-44.

Rizzo, J. R., House, R. J., & Lirtzman, S. I. (1970). Role conflict and ambiguity in complex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2), 150-163.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Tyler, T. R.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Yale University Press.

U.S. Secret Service, National Threat Assessment Center. (2018). *Enhancing school safety using a threat assessment model: An operational guide for preventing targeted school violenc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文部科学省. (2024). いじめの重大事態の調査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https://www.mext.go.jp/content/20240830-mext_jidou01-1336275_3.pdf

3. 언론기사

권한일. (2024. 7. 23). [기획] '학폭 전담조사관'제도 유명무실… 교사들 성토.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793.

김민정. (2024. 3. 29). 학폭조사관 도입...'교사동석' 등 부담여전,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2.

김창학. (2024. 2. 28).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은 기대 반 우려 반".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442.

뉴시스. (2023. 12. 7).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영역으로…누가 하며 어떻게 일하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207_0002549690.

민경진. (2023. 12. 7). "학교폭력 사건, 전담조사관이 맡는다...교원단체 환

영”. 국제신문. https://v.daum.net/v/20231207173549780.
연합뉴스. (2024. 4. 14). ‘학폭 조사관’ 도입 한달…교사들, 학부모 ‘악성 민원’ 벗어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2099800530.
윤근혁. (2024a. 3. 29). '퇴직경찰' 학폭조사관, 인천이 60% 최고...“제도 없애라”. 교육언론[창].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
윤근혁. (2024b. 4. 22). 퇴직경찰 학폭 조사관? 선진 7개국엔 이런 제도 없다. 교육언론[창].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9.
윤두현. (2024. 6. 25).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관련 정책간담회 결과. 교육언론[창].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5.
이상현. (2023. 12. 7).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신설…배경에는 尹“경찰에 맡겨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93524.
장재훈. (2023. 10. 7). “학교폭력 경찰로 넘겨야” 윤 대통령 사이다발언 교사들 모처럼 웃었다.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0.
정은수. (2023. 1. 19). [영국] 학교전담경찰 배치 43%증가.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8.
조현정. (2017. 9. 9). 학교폭력에 자살...부모까지 처벌한 미국, 우리와 달랐다. 조선비즈. https://v.daum.net/v/20170909100028868.
최윤서. (2025. 2. 13). 충청권 교사 절반 “업무·민원 부담 줄었다”…협력은 ‘글세’.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840.

부 록

부록 1. 1차 델파이 집단별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표 1-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1-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3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4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5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6	4.50	0.71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1-7	3.40	1.08	4	3.00	3.00	-0.20	2.75	4.25	3.00	0.50	0.75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1-7 :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표 1-2]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4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1-5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1-6	4.60	0.51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7	3.70	1.34	7	4.00	4.00	0.40	2.75	5.00	4.00	0.44	1.13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1-7 :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표 1-3]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50	0.53	10	4.50	5.00	1.00	4.00	5.00	4.50	0.78	0.50
1-4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5	4.00	0.67	8	4.00	4.00	0.60	3.75	4.25	4.00	0.88	0.25
1-6	4.00	0.82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1-7	3.40	0.70	3	3.00	3.00	-0.40	3.00	4.00	3.00	0.67	0.50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1-7 :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표 1-4]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구분	패널 의견	
1-1	긍정	- 학교나 교육청 등 이해관계와 무관한 제3자(전문조사관)가 조사를 주도함으로써 사안 처리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1-2	긍정	-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전담조사관 개인의 가치관과 역량 차이에

		따라 조사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1-3	긍정	- 전담조사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될 경우, 학생·학부모가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하는 데 긍정적임.
1-4	긍정	- 학교 자체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적 개입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음.
1-5	긍정	-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신뢰가 깨진 시점에서는 전담조사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안을 처리해야 함.
1-6	긍정	- 학교 내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조사 공간을 확보하여 조사의 비밀 유지와 안정감을 제공해야 함.
1-7	부정	- 별도의 외부공간보다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지정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1-7 :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표 1-5]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2-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2-3	4.20	1.14	7	5.00	5.00	0.40	3.00	5.00	5.00	0.60	1.00
2-4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60	0.70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6	4.20	0.92	9	4.00	4.00	0.80	4.00	5.00	4.00	0.75	0.50
2-7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 지원 마련

[표 1-6]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50	0.53	10	4.50	4.50	1.00	4.00	5.00	4.50	0.78	0.50
2-2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3	4.10	0.57	9	4.00	4.00	0.80	4.00	4.25	4.00	0.94	0.13
2-4	4.50	0.53	10	4.50	4.50	1.00	4.00	5.00	4.50	0.78	0.50
2-5	4.10	0.88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00	0.82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2-7	4.20	0.79	8	4.00	4.50	0.60	3.75	5.00	4.00	0.69	0.63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 지원 마련

[표 1-7]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2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2-3	4.30	1.06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4	4.50	0.85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5	4.00	1.05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 지원 마련

[표 1-8]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1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구분	패널 의견	
2-1	긍정	- 책임교사의 업무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됨.
	의견	- 전담조사관은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학교는 관계 회복 및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이원화해야 함.
2-2	긍정	-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위해 전담조사관 제도는 필수적임.
2-3	긍정	- 전담조사관 배정 후에는 전담조사관이 직접 학생·학부모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임.
	부정	- 학부모 민원 응대 및 일정 조율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학교 책임교사가 행정 주체가 되어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임.
2-4	긍정	- 학교는 초기 사안 인지 및 간략한 내용 파악에 그치고, 심층 조사 및 사안 규명은 전담조사관에게 일임하여 역할 중복을 해소해야 함.
2-5	긍정	- 교사가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동석이 필요함.
	부정	- 교사 동석시 학생의 진술 위축 우려 및 일부 교사의 조사 방해(타 업무 수행 등)로 인해 조사의 몰입도가 저해됨.
2-6	긍정	- 사안 접수 즉시 전담조사관이 투입되어야 학생의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
	부정	- 전담조사관의 역량 부족 및 학교 상황 이해도 미흡을 고려할 때, 초기 조사는 학교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7	의견	-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목격 학생 진술 확보가 필요하나, 사법기관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진술을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1-9]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3-1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4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5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6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7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8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1-10]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3-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5	3.90	0.99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3-6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8	3.80	1.23	6	4.00	5.00	0.20	2.75	5.00	4.00	0.44	1.13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1-11]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3-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5	3.80	0.92	5	3.50	3.00	0.00	3.00	5.00	3.50	0.43	1.00
3-6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3-7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3-8	4.00	0.94	6	4.00	3.00	0.20	3.00	5.00	4.00	0.50	1.00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1-12]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구분	패널 의견	
3-1	긍정	- 학교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여 문제 해결에 기

		여함(위촉 기관의 선발 및 배치 역량(적재적소)에 따라 전담조사관의 질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3-2	긍정	-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는 책임교사 업무 경감과 학부모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로 직결됨.
3-3	긍정	- 성폭력, 장애 관련 사안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화된 전담 인력 양성 및 우선 배치시스템이 시급함.
3-4	긍정	- 관리 기관(교육청 등) 주도로 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3-5	긍정	- 원활한 조사를 위해 상담 기법 및 사례 공유 연수가 확대되어야 함.
	부정	- 과도한 상담 및 소통 접근은 조사의 본질(사실 확인)을 흐리고, 조사관의 역할을 훈육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음.
3-6	긍정	- 현재 전담조사관 개인 역량에 따른 조사 수준 차이가 크므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조사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함.
3-7	긍정	- 조사 배정 시기 및 보고서 제출 기한 등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운영 일정 확립이 필요함.
3-8	긍정	- 단순 연수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형별(성, 사이버 등) 전문가 채용 및 자격요건(인증제)을 강화해야 함.
	부정	- 유형별 채용의 현실적 어려움(예산, 인력풀)을 고려할 때,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함.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1-13]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	긍정	중위수	최빈값						

		(SD)	답변								
4-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4	3.80	1.03	6	4.00	4.00	0.20	3.00	4.00	4.00	0.50	1.00
4-5	4.30	0.82	8	4.0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4-6	4.70	0.68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4-7	4.70	0.68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근무 형태 개선,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1-1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4-1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3.70	0.95	6	4.00	4.00	0.20	3.00	4.25	4.00	0.69	0.63
4-5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4-6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7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근무 형태 개선,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1-15]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4-1	4.50	0.53	10	4.50	5.00	1.00	4.00	5.00	4.50	0.78	0.50
4-2	4.30	0.68	9	4.00	4.00	0.80	4.00	5.00	4.00	0.75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4-5	4.00	1.41	6	5.00	5.00	0.20	3.00	5.00	5.00	0.60	1.00
4-6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4-7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근무 형태 개선,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1- 16]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1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구분	패널 의견	
4-1	긍정	- 위촉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적 지위 강화가 필수적임. - 녹취 등 조사과정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전담조사관을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함.
	부정	- 비정기적인 사안 발생 특성상 정규직화 등 완전한 신분 보장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4-2	긍정	- 안정적인 보수 체계 마련은 우수인력(고급인력)확보의 선결 조건이며, 지역별로 상이한 처우 규정을 동일하게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4-3	긍정	- 조사권 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 발생

		하는 분쟁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 및 보험 제도 도입이 필요함.
4-4	수정	- ***학교폭력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담조사관의 교육청 상주나 권역별 고정 배치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권역별 거점 운영으로 요인 변경 요청.***
4-5	긍정	- 전담조사관이 화해·중재를 병행할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별도 화해 중재 위원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이 감소함.
	부정	- 전담조사관의 역량 부족, 조사와 중재의 역할 갈등, 중재 실패시 민원 발생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이 우려됨. - 전담조사관과 화해 중재는 각각의 고유한 역할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4-6	긍정	-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한 운영 방식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표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
4-7	긍정	- 도입 초기의 우려와 달리 조사관의 역량이 개선되고 있으며, 교사의 중립성 확보 및 학부모의 신뢰를 위해 본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어야 함.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근무 형태 개선,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부록 2. 2차 델파이 집단별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표 2-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1-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3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4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5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6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2-2]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4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1-5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1-6	4.40	0.52	10	4.00	4.00	1.00	4.00	5.00	4.00	0.75	0.50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2-3]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1-4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5	4.00	0.67	8	4.00	4.00	0.60	3.75	4.25	4.00	0.88	0.25
1-6	4.30	0.48	10	4.00	4.00	1.00	4.00	5.00	4.00	0.75	0.50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2-4]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구분	전문가 의견	
1-1	긍정	-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뒷받침할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전문성을 겸비한 전담조사관 육성이 필요함.
1-2	긍정	- 조사의 공정성은 결국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에서 비롯되므로,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필요함.
1-5	부정	- 학생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1-6	긍정	- 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접근성, 이동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외부 기관보다는 학교 내 독립된 전용 조사 공간 마련이 시급함.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2-5] 업무부담 및 범위 조정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 (M)	표준편차 (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2-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2-3	4.20	1.14	7	5.00	5.00	0.40	3.00	5.00	5.00	0.60	1.00
2-4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60	0.70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6	4.20	0.92	9	4.00	4.00	0.80	4.00	5.00	4.00	0.75	0.50
2-7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2-6]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2-2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3	4.10	0.57	9	4.00	4.00	1.00	4.00	4.25	4.00	0.94	0.13
2-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2-5	4.10	0.88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00	0.82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2-7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2-7] 현장 업무부담 및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2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2-3	4.30	1.06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4	4.50	0.85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5	4.00	1.05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50
2-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2-8] 현장 업무부담 및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2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구분	패널 의견	
2-1	긍정	- 전담조사관 제도가 책임교사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최우선 목적인 업무 경감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2-3	부정	- 학생 및 학부모의 성향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전담조사관이 일정 조율에는 세심한 주의와 접근이 필요.
2-6	긍정	- 학생이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사안 접수 직후부터 전담조사관이 조기에 투입되어야 함.
	부정	- 학생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교사의 고유한 교육적 중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반대.
2-7	긍정	- 진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이 요구.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2-9]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3-1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4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5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6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7	4.50	0.71	9	5.00	5.00	0.80	5.00	5.00	5.00	0.80	0.50
3-8	4.50	0.71	9	5.00	5.00	0.80	5.00	5.00	5.00	0.80	0.50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2-10]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교육청 담당자)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3-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5	3.90	0.99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3-6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8	3.80	1.23	6	4.00	5.00	0.20	2.75	5.00	4.00	0.44	1.13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2-11]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3-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5	3.80	0.92	5	3.50	3.00	0.00	3.00	5.00	3.50	0.43	1.00
3-6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3-7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3-8	4.00	0.94	6	4.00	3.00	0.20	3.00	5.00	4.00	0.50	1.00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2-12]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구분	패널 의견	
3-1	긍정	- 전담조사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의 질적 수준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확보가 필수적임.
3-2	긍정	- 전담조사관의 역량이 학교 현장의 대응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함.
3-3	긍정	- 학교폭력 사안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함.

3-4	긍정	- 실제 조사과정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교육이 되어야 함.
3-5	부정	-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사실확인에 있음. 상담 및 소통은 담당 교사의 역할임.
3-8	긍정	- 유형별 전문 역량을 갖춘 전담조사관 투입이 필요하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담 및 소통 역량을 갖춘 전담조사관 배치가 필요함.
	부정	- 1년 단위 위촉직이라는 고용 형태의 한계로 인해 유형별 전문가 채용 및 전문성 축적에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2-13]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4-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4	3.90	0.88	6	4.00	3.00	0.20	3.00	5.00	4.00	0.50	1.00
4-5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4-6	4.70	0.68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4-7	4.70	0.68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2-1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합의	수렴

	평균 (M)	표준 편차 (SD)	긍정 답변	중위수	최빈값				n	도	도
4-1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3.70	0.95	6	4.00	4.00	0.20	3.00	4.25	4.00	0.69	0.63
4-5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4-6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7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2-15]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 (M)	표준 편차 (SD)	긍정 답변	중위수	최빈값						
4-1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4-2	4.30	0.68	9	4.00	4.00	0.80	4.00	5.00	4.00	0.75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3.50	0.71	4	3.00	3.00	-0.20	3.00	4.00	3.00	0.67	0.50
4-5	2.70	1.06	1	3.00	3.00	-0.80	2.00	3.00	3.00	0.67	0.50
4-6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4-7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2-16]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구분	패널 의견	
4-1	긍정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처우 개선 및 법적 조치 강화 필요함.
4-2	긍정	- 특수분야(장애, 성, 다문화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함.
	부정	- 비정기적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보수 체계 및 근무 형태에 신중한 접근 필요함.
4-3	긍정	- 조사과정의 녹음 제도 도입 및 불법 녹음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2년 임기제 도입방안 검토가 필요함.
	부정	- 교권 보호 미비 상황에서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적 보호 시 형평성 논란 우려됨.
4-4	부정	- 선호 권역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 간 인력 수급 편차 발생 우려됨.
4-5	부정	- 권한 부여시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오히려 커져 학교의 민원 부담 가중 우려가 있음.
4-6	긍정	- 시·도 교육청 간 통일된 제도 운영 지침(매뉴얼) 확립 필요함.
4-7	긍정	- 교사의 학업 및 생활지도 전념, 업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긍정적 효과 확인에 따른 지속적 확대가 필요함.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부록 3. 3차 델파이 집단별 분석 결과

[표 3-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	중위수	최빈값						

			변								
1-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3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4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5	4.60	0.70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1-6	4.30	0.82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3-2]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4	4.10	0.88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1-5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1-6	3.90	1.29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3-3]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50	0.53	10	4.50	5.00	1.00	4.00	5.00	4.50	0.78	0.50
1-4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1-5	4.00	0.67	8	4.00	4.00	0.60	3.75	4.25	4.00	0.88	0.25
1-6	3.90	0.88	6	4.00	3.00	0.20	3.00	5.00	4.00	0.50	1.00

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3-4]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2-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2-3	3.60	1.35	5	3.50	5.00	0.00	2.00	5.00	3.50	0.14	1.50
2-4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60	0.70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6	3.90	0.99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2-7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3-5]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2-2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3	3.70	0.82	5	3.50	3.00	0.00	3.00	4.25	3.50	0.64	0.63
2-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2-5	4.10	0.88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00	0.82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2-7	3.80	0.92	5	3.50	3.00	0.00	3.00	5.00	3.50	0.43	1.00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3-6]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2-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2	4.70	0.68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2-3	4.00	1.33	6	5.00	5.00	0.20	2.75	5.00	5.00	0.55	1.13
2-4	4.50	0.85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5	4.00	1.05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3-7]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	긍정	중위수	최빈값						

		(SD)	답변								
3-1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4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5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6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7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3-8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3-8]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3-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5	3.90	0.99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3-6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8	3.50	1.27	5	3.50	2.00	0.00	2.00	5.00	3.50	0.14	1.50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3-9]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3-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5	3.80	0.92	5	3.50	3.00	0.00	3.00	5.00	3.50	0.43	1.00
3-6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3-7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8	3.80	0.92	5	3.50	3.00	0.00	3.00	5.00	3.50	0.43	1.00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3-10]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4-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	1.00	0.00
4-2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	1.00	0.00
4-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	1.00	0.00
4-4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	1.00	0.00
4-5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	1.00	0.00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3-11]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4-1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5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3-12]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M)	표준편차(SD)	긍정답변	중위수	최빈값						
4-1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4-2	4.30	0.68	9	4.00	4.00	0.80	4.00	5.00	4.00	0.75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4-5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ABSTRACT

A Study on the Stabl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Kim, Min-Jae

Major in Policy Scienc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ways to stably establish and develop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newly introduced in March 2024.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enhance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case investigations and reduce teachers' administrative burden; however, it was implemented without sufficient pilot operation or field consultation, leaving institutional foundations—such as the investigators' legal status, scope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boundaries of duties—still in need of discussion.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study addressed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can be derived through the Delphi technique? Second, what ar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the derived factors? Third, what differences exist i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these factors among

dedicated investigators, education office officials, and school-designated teachers?

To this end, an expert panel of 30 members—10 each from dedicated investigators, education office officials, and school-designated teachers—was constituted, and a three-round modified Delphi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a review of prior literature and preliminary expert review, an initial measurement instrument comprising 32 factors under four categories—fairness and field acceptance, workload and scope of duties, job competency and expertise, and stability and status guarantee—was constructed. Content validity ratio (CVR), consensus, convergence,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analyzed at each round, and through a process of revision informed by expert opinions, a final set of 26 factors under four categories was deriv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ranking of category importance was fairness and field acceptance, stability and status guarantee, job competency and expertise, and workload and scope of duties, in that order. The fact that fairness and field acceptance emerged as the top-priority category indicates that a shared awareness exists among all stakeholders regarding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previous teacher-led school violence case-handling structure. Second, among all factors, enhancement of professional expertise was identified as the most critical task, followed by protection from legal disputes,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the system, and securing fairness. Transfer of administrative tasks and recruitment of type-specific experts were confirmed as persistent points of disagreement among the expert panel, failing to achieve content validity through the third round. Third, group-level analysis revealed differing perception tendencies according to each group's role and field experience: the dedicated investigator group rated fairness and field acceptance as the top priority, the education office group rated

stability and status guarantee highest, and the school-designated teacher group rated workload and scope of duties highest. Notably, within the stability and status guarantee category, the dedicated investigator group ranked legal status guarantee and improved compensation treatment as the highest priorities, whereas the education office and school-designated teacher groups ranked improved compensation treatment lowest—representing the most pronounced divergence in perception across group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dedicated investigators' legal status and authority, building a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stitutionalizing role division and cooperation among dedicated investigators, education offices, and schools, and refining standard operating guidelines. As an early study systematically exploring the development factors of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key stakeholder groups,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in providing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Key Words】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Delphi Method, Content Validity, Importance Analysis